

2022 찾아가는 4대사회보험 교육





“찾아가는 4대사회보험 교육 E-Book”은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 ▶ 4대사회보험 신고 절차와 방법, 중소기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무사례 위주로 구성하여 중소기업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유용합니다.

사업장 담당자 및 개인 이용자

- ▶ 누구나 쉽게 4대사회보험 제도를 이해하고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4대보험제도 및 포털 사이트 이용방법을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교육 영상을 보며 쉽게 공부해 볼까요?

-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를 클릭하시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포털사이트로 이동하여 교육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E-Book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가 주관하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 협업 제작하였습니다.

Contents



I.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이용방법

0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소개	06
02. 민원신고서 접수	07
03. 포털사이트 이용방법	14



II. 국민연금 제도 안내

01. 국민연금 제도란?	40
02. 국민연금사업장실무	42
03. 국민연금 혜택	61



III. 건강보험 제도 안내

01. 국민건강보험 제도	64
02. 사업장 및 가입자 관리	66
03. 징수 관리	95
04. 웹 EDI 서비스	96
05. 보험급여 및 건강검진	98
06. 노인장기요양보험	105
07.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08



IV. 고용산재보험 제도 안내

01. 고용/ 산재보험 기초	112
02.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방식	116
03. 부과지사사업장 보험료 산정	120
04. 고용/산재보험 적용	126
05. 피보험자격 및 고용정보 신고	131
06. 보험사무대행제도 안내	139
07. 근로복지공단 안내	140



I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이용방법**

0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소개

설립배경

◆ 4대 사회보험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해당 정보를 **모든 기관에 공유!**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 (1998~)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개소 (2002.10.31)	서비스 개시(2003) 전산 시스템 및 사이트 오픈, 공통신고 업무 전면 시행
-------------------------	---------------------------------	---

◆ 5개 사회보험기관이 공동으로 센터 운영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	--

- 원스톱 민원신고 서비스 운영
-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증명서를 한장으로 통합발급
- 사회보험 업무 효율화를 위한 협업과제 추진

4대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	--

-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4대 보험료율(2022.1. 기준)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용자(사업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	4.5%	4.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6.99%	3.495%	3.495%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8%	보수월액의 0.8% 고용안정사업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차이 있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27%	근로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 2022.7.1.부터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요율 각각 보수월액의 0.9% 적용

4대보험신고를 처음 맡은 사업장 담당자의 BEST 질문 3가지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통합된 것일까요?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나와요.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도 한 장으로 출력돼요.

▶▶ 4대사회보험은 통합되지 않았고 각 공단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신고서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에 접수해도 될까요?

- 건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에 접수했을 때 과연 접수의 효력이 있을까요?

▶▶ 11p를 참고하세요.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 명칭은 왜 다를까요?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부험자격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보험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라 사용하는 고유 명칭으로 4대사회보험 각 공단은 법령이 정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도입 전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전, 접수받은 신고서는 각 기관의 고유시스템에만 등록·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연계X)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도입 전 민원신고서 접수 예시



근무하시던 직원 한 분이 퇴사했어요.

▶ 과거에는 보험별 서식을 각각 작성해서 각 공단으로 개별 접수를 해야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회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납부재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회사)	(이동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업장(기관)	① 사업장 관리번호	② 사업장 명칭	③ 전화번호
가입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⑥ 전화번호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⑩ 취득(상실) 연월일
		⑪ 취득(상실) 부호	⑫ 장애인·국가유공자 종류 부호
		⑬ 등록일	⑭ 등록일
		⑮ 국적	⑯ 체류자격
		⑰ 체류기간	

근로복지공단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연금제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국공·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는 통합서비스(otal.com)를 이용하여 편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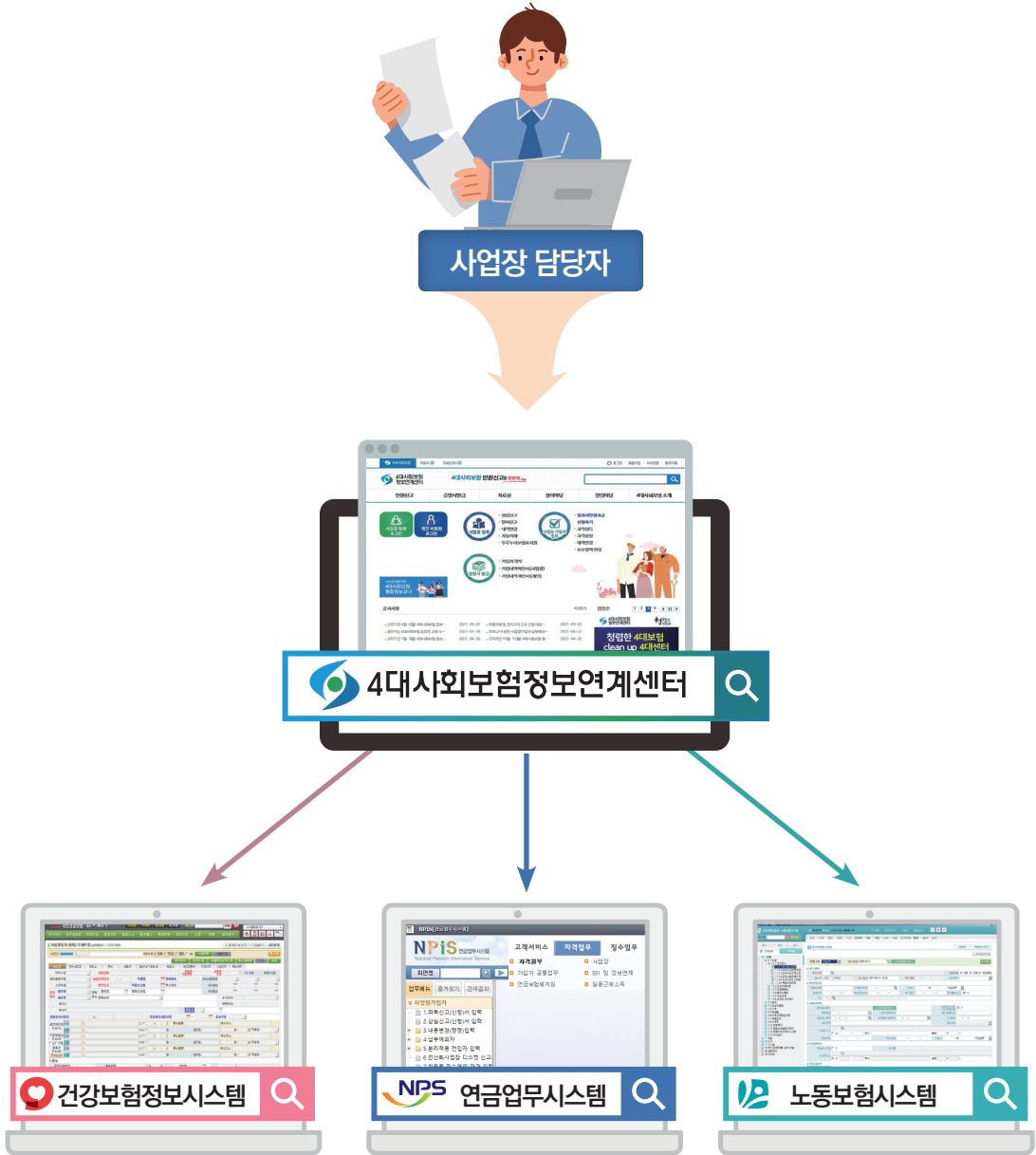
※ 문의: 1588-0075 ※ 접자팩스번호: ※ 사업장작성지: (전화번호:)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직업자명	(전화:)	처리기간 5일
신고 사업장	사업구분:	사업장관리번호:	공사명(건설공사):	
	사업장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유대전화:	FAX:	E-mail:
사계분류	구분	산정기간	①보수총액	②보급료율 ()
	일반			/1,000
	특수장해근로자			/1,000
			③특정보급료액 (①×②)	④개인보급료액
			⑤신고액	⑥납부액
			⑦추가납부금액 (⑤-⑥)	⑧초과액 (⑤-⑧)
			중당액	반환액



과거에는 퇴사하는 직원의 자격상실신고를 하려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접수해야 처리가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도입 후 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에 한 번의 신고만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각 기관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도입 후 민원신고서 접수 예시



근무하시던 직원 한 분이 퇴사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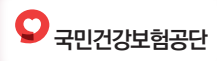
▶ 어느 공단으로 취득, 상실 신고서를 접수해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으로 연계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위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지 않습니다. (왼쪽)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오른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팩스번호
			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인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YYYY.MM.DD)	국민연금 상실 부호
			초일취득· 당월상실자 납부여부
			국민건강보험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해당 연도
			전년도
			구분
			구체적 사유
			상실 사유
			해당 연도 보수 총액
			전년도 보수 총액
			고용보험
			고용보험



4대보험정보연계시스템 [지사 창구직원용]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form for reporting insurance status changes. It includes sections for '가입자정보' (Employee Information) with fields for name, ID, and address, and '보험과 동일' (Insurance Status) with fields for insurance type, contribution period, and termination date. The interface is in Korean and includes a sidebar with navigation options.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도입 후 민원신고서 접수 예시



건강보험 신고서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에 접수해도 될까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에 접수했을 때 과연 접수의 효력이 있을까요?

▶ 공통업무인 가입자 취득신고와 함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어느공단에 신고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연계가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7. 1.>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충인하수급인에 한함)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4개소신고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부호	초일취득· 당월상실자 남부여부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실 사유		해당 연도 보수 총액	전년도 보수 총액	구분 코드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	고용보험	고용보험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보수 총액	근무 개월수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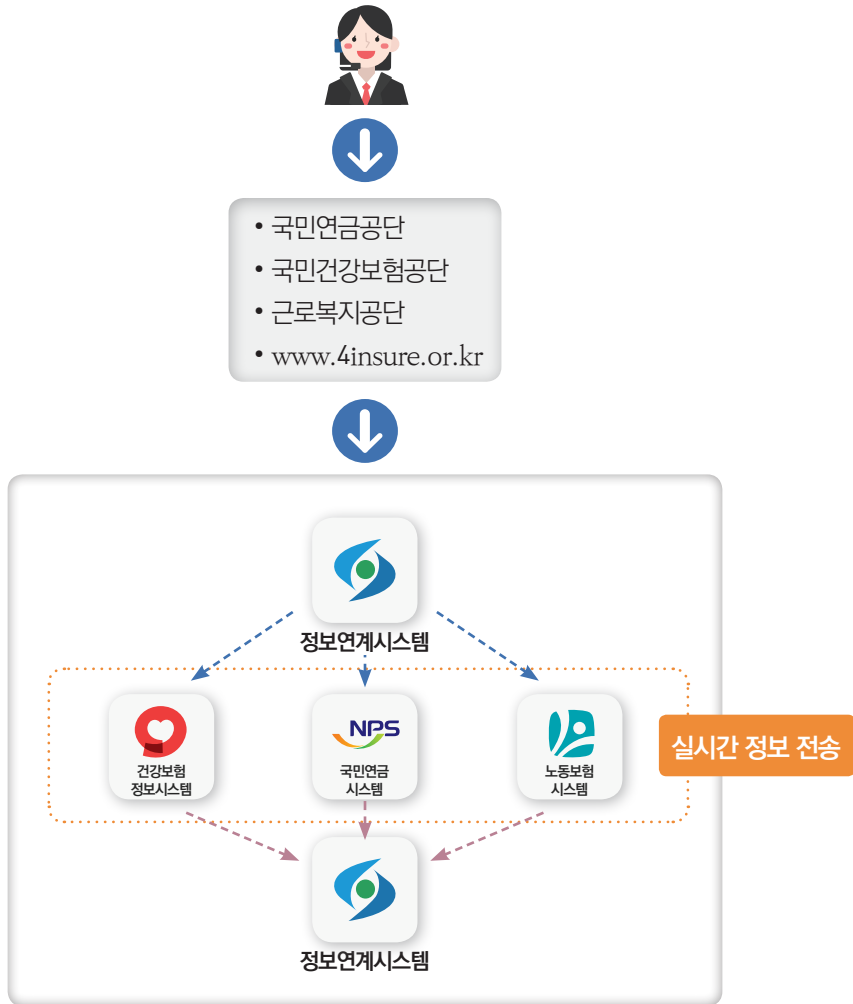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07mm×310mm(배치지:80%/세) 또는 종지지(80%/세)

4대보험 공통업무 처리절차



- 4대보험 공통업무는 어느 공단으로 신고하더라도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각 공단에 실시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 각 기관에 접수한 신고서 처리 결과는 4대보험공단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03

포털사이트 이용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서 작성 가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민원신고 | 증명서발급 | 자료실 | 참여마당 |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 소개

사업장 회원 로그인 | 개인 비회원 로그인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 탈퇴신고
- 내역변경
- 자동차세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사업장 가입자 업무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
- 자격취득
- 자격상실
- 내역변경
- 보수월액 변경

증명서 발급

- 가입자 명부
- 가입내역확인서(사업장)
-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수상공인을 위한 4대사회보험 통합정보코너

공지사항

[2021년 4월-6월] 4대사회보험 경보...	2021-09-07	· 자동차세 및 전자과제 신규 신청 대상...	2021-09-02
· 찾아가는 4대사회보험 온라인 교육 오...	2021-07-26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가입자 남부예외...	2021-06-22
· [2021년 1월-3월] 4대사회보험 경보...	2021-04-26	· [2020년 10월-12월] 4대사회보험 경...	2021-04-26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취득
- 피부양자 자격상실
- 지역가입자 자동차세

민원처리 현황

민원신고내역 실시간 조회
포털서비스를 통해 신고한 모든서식

타기관 서비스 업무

- 완납증명서(납부확인서) 발급
-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 과거가입이력 조회
- 4대보험제도 문의

4대사회보험 기관지사찾기

청렴한 4대보험 clean up 4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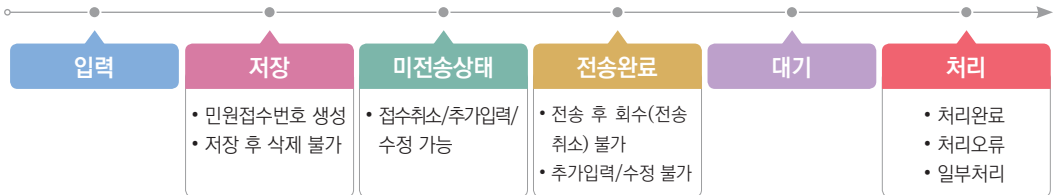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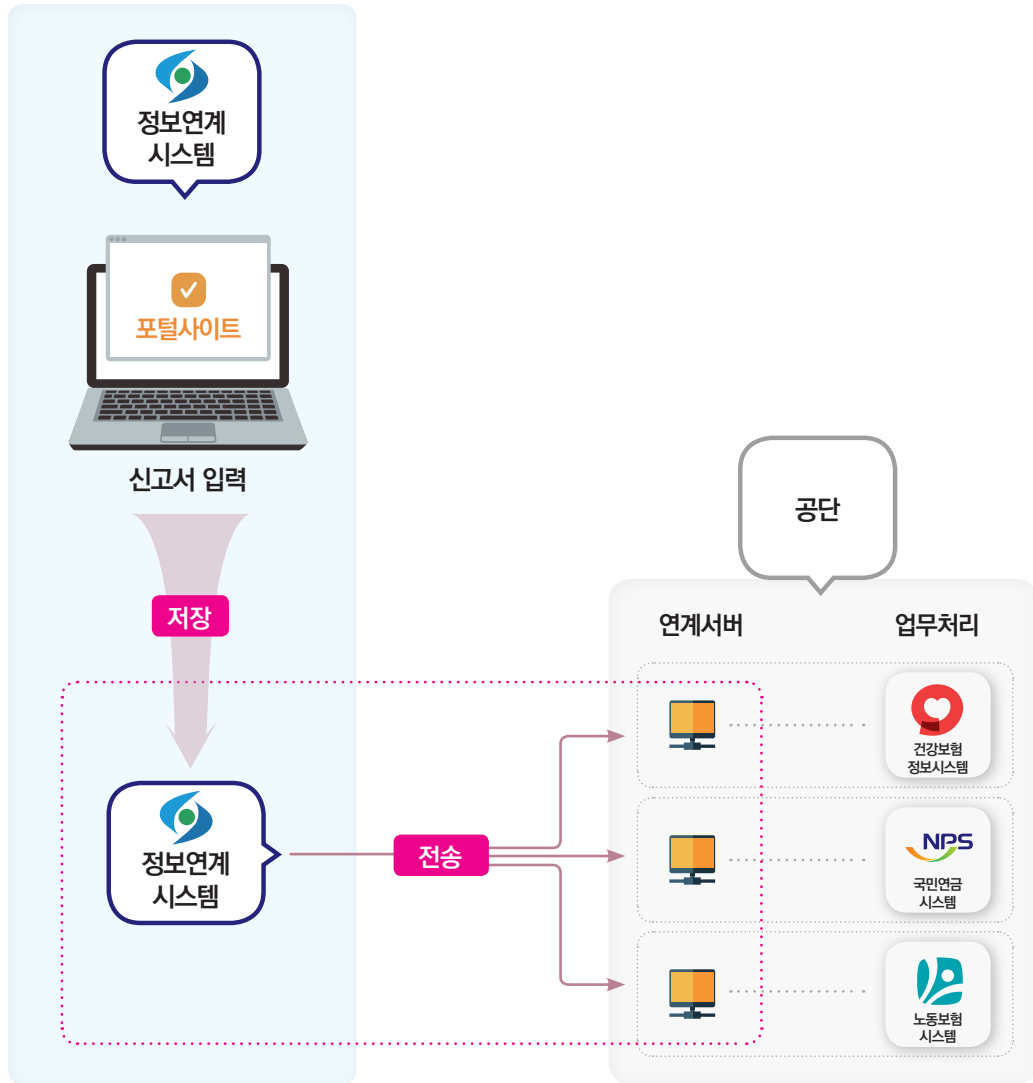
이용안내 063-711-7800(유료) | 국민연금 1355(유료) | 건강보험 1577-1000(유료) | 고용보험(자격)-산재보험 1588-0075(유료) | 고용보험(급여) 1350(유료)


무단 이메일수집거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보공개제도 | 이용약관 | 도로명주소검색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4층 / 근무:월-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공휴일은 쉰니다)
Copyright © 2016 4 Social insurance information system. All Rights Reserved.

WA WEB ACCESSIBILITY | e-PRIVACY | 청렴한 4대보험

전산신고 처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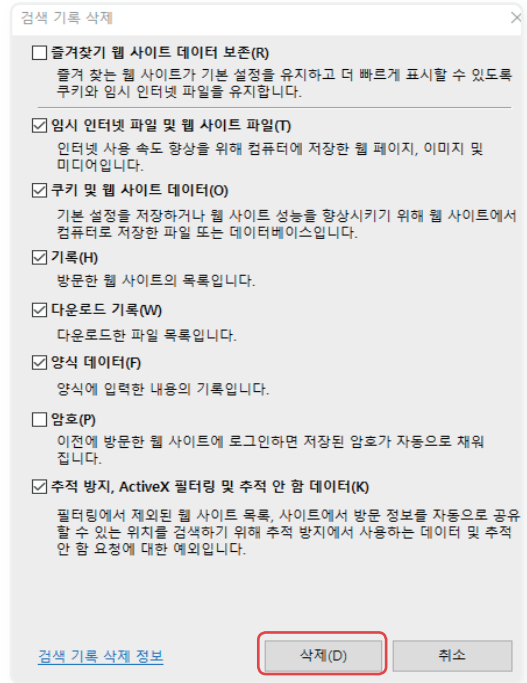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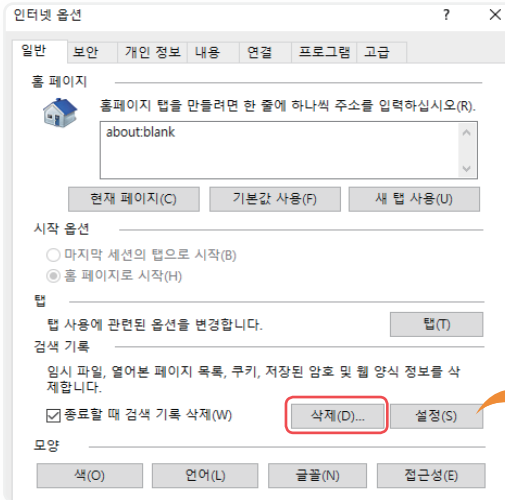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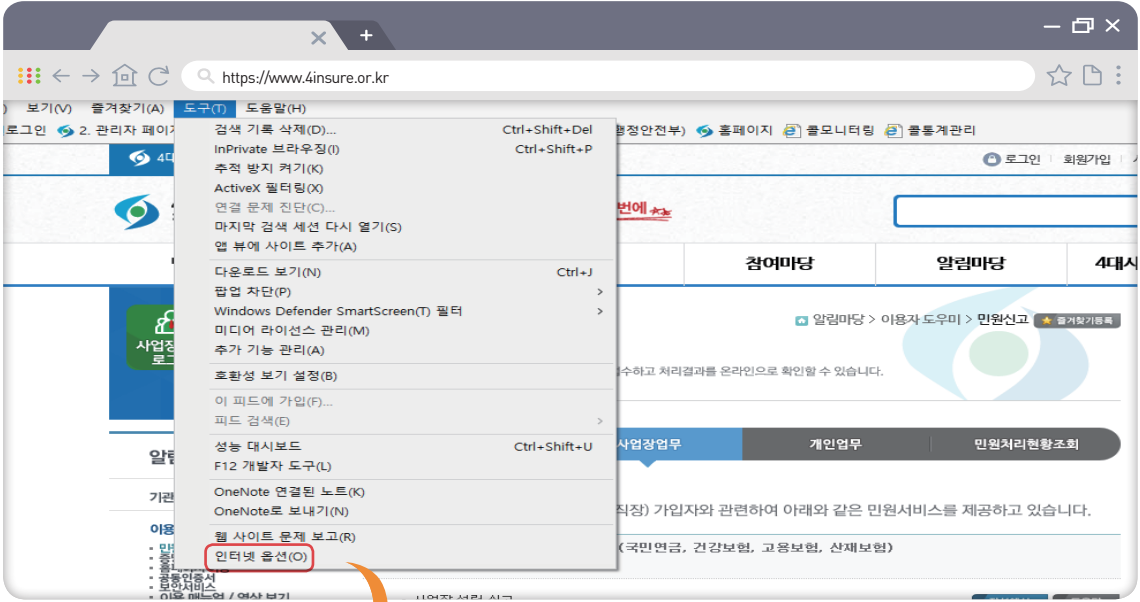


 **유의사항**
 ※ 전송완료 이후에는 전송취소·수정이 불가(내용정정 필요시 각 기관으로 요청)

전산오류에 대한 해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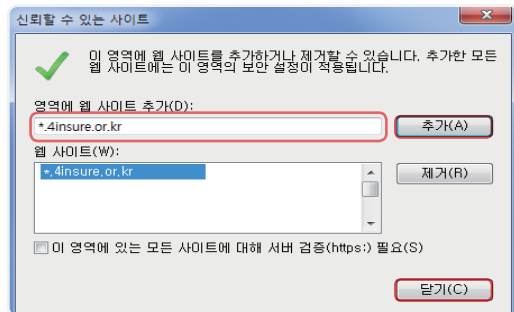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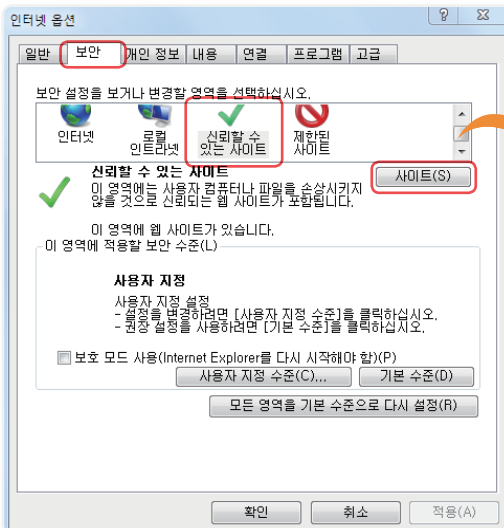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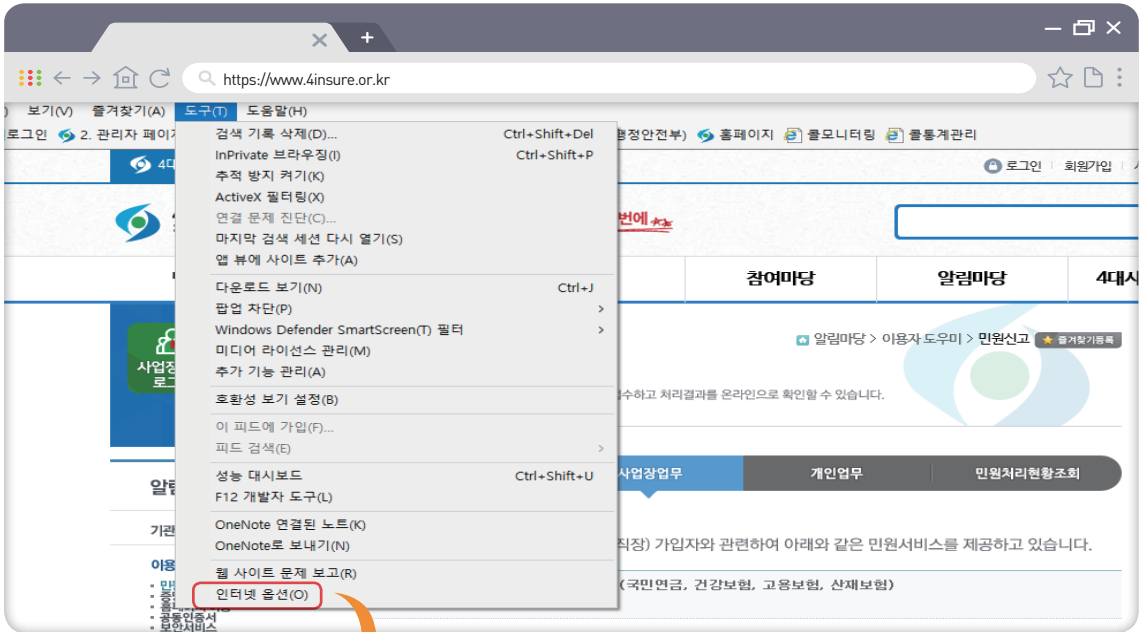
- 공동 인증서/로그인 오류, 자료 입력 오류, 출력/프린터 오류 발생시 해결 방법

○ 인터넷 검색 기록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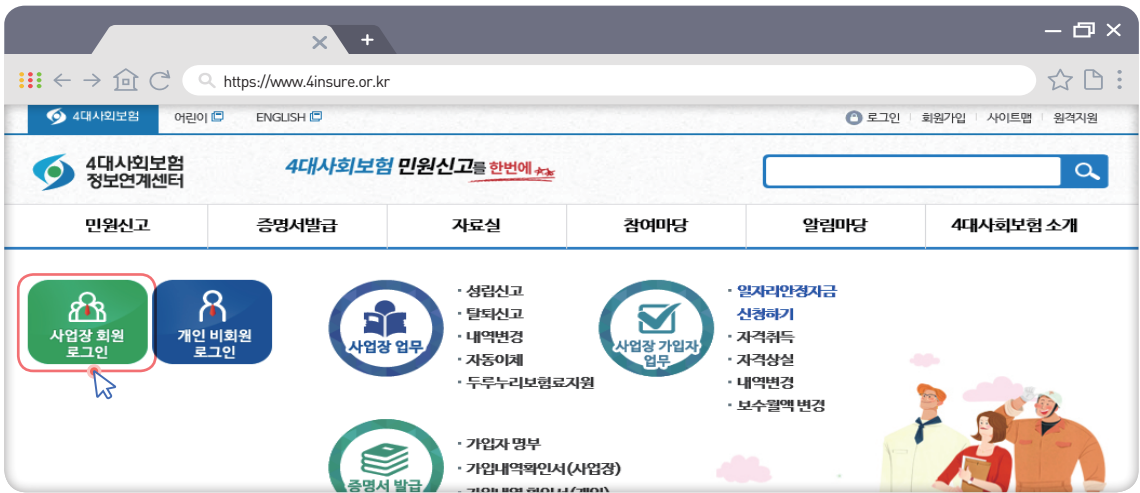
알림마당 > [오류해결도우미]
- 계시번호 23번 이용가이드 참조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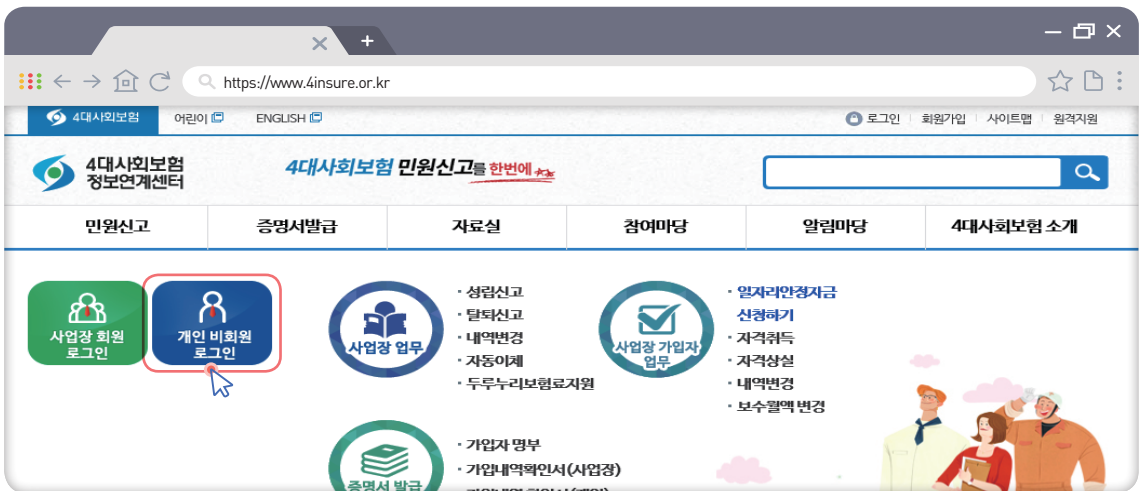


회원의 종류와 이용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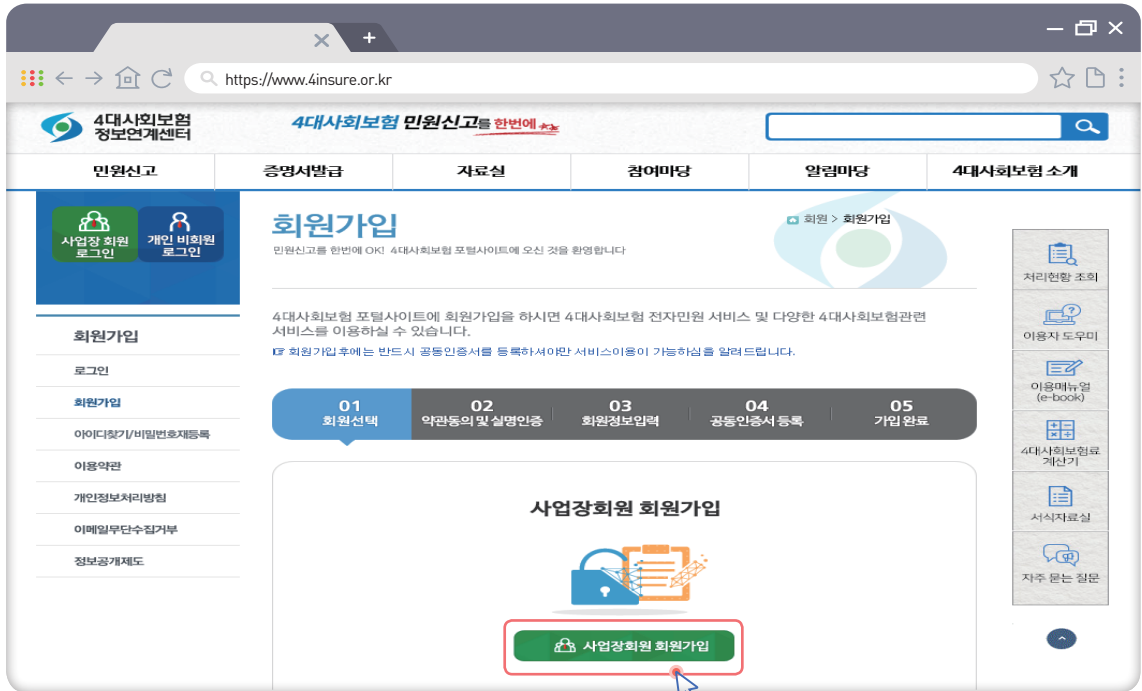
- 회원의 종류 : 사업장 회원 및 개인 비회원
- 사업장 회원
 - 사업장(법인, 개인) 업무처리 용도로 이용
 - 반드시 회원가입 후 이용



- 개인 비회원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
 -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로 이용 가능



○ 사업장 회원가입



- 실명인증 → 사업자등록 자료
 - 공동인증서 정보 → 국세청 자료
- 회원정보 입력
 - ID : 영문, 숫자 혼용하여 6 ~ 12자
 - PW : 영문, 숫자, 특수문자 9 ~ 12자
- 공동인증서 등록
 - 발급용도별 등록가능 인증서 여부

등록가능 인증서	등록불가 인증서
은행/보험용 개인/기업인증서 조달청용 개인인증서 신용카드용 개인인증서 주식거래용, 전자입찰, 전자거래용 인증서 무역거래, 보건복지용도제한용 인증서	GPKI 인증서(행안부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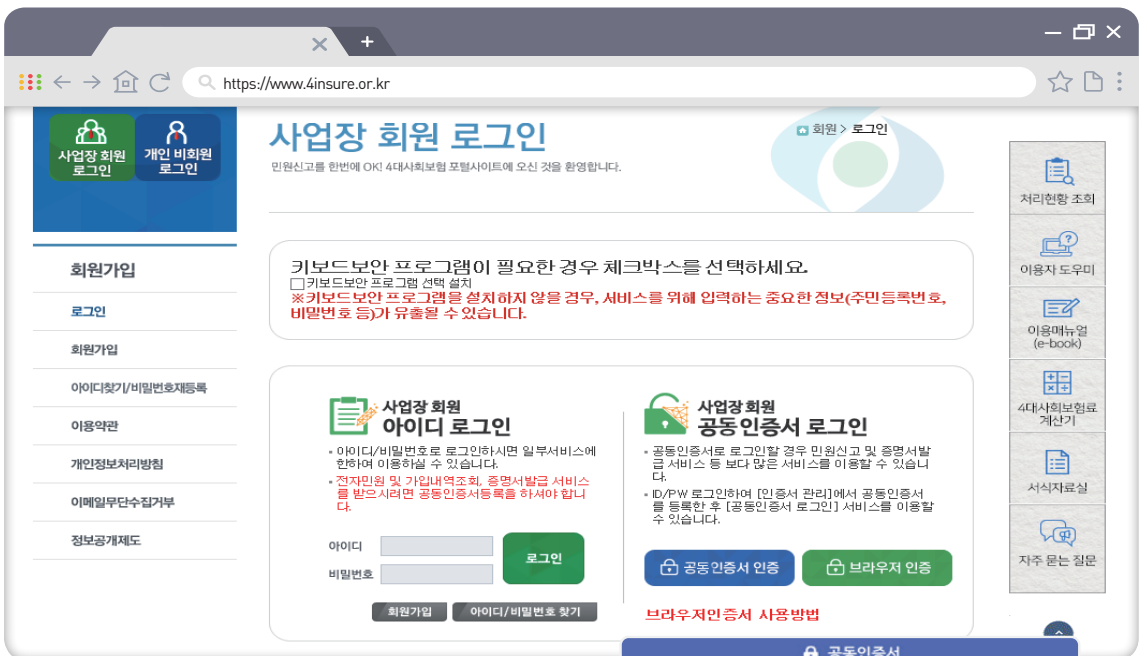
○ 사업장 회원 로그인 방법

• [아이디 로그인] → 공통신고업무 불가

- 인증서 (재)등록 시 이용
- 사업장 회원정보 변경
- 묻고답하기, 친절/불친절, IT신기술제안, 정보연계요청

• [인증서 로그인] → 모든 업무 가능

-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사업장 ID 관리 및 관리번호 체계

○ 사업장 ID 관리

- 사업장 관리번호가 다수인 경우 ID 관리 필요 : 사업장 관리 번호가 다수인 경우
- 사업장 관리번호별 ID 사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공인인증서 등록
123-45-67890	123-45-67890-0 (건강/연금)	⊙ 4insure_A		
	907-01-23456-7 (고용/산재)	◎ 4insure_B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아이디 4insure_A, 4insure_B 중 하나를 선택함)

- 하나의 ID 사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공인인증서 등록
123-45-67890	⊙ 123-45-67890-0 (건강/연금)	4insure		
	◎ 907-01-23456-7 (고용/산재)			

- 로그인 후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메뉴를 통해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 사업장 관리번호 체계

-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10)+구분코드(1)

ex 123-45-69789-0

-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준등록번호(10)+구분코드(1)

ex 907-01-23456-1

- 첫째자리는 '9'로 고정
- 둘째 ~ 셋째자리 '07'은 자료입력일의 연도
- 넷째 ~ 열째자리 '01-23456'은 일련번호(0000001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 열한 번째 자리 '1'은 구분코드

- 사업장 관리번호 [구분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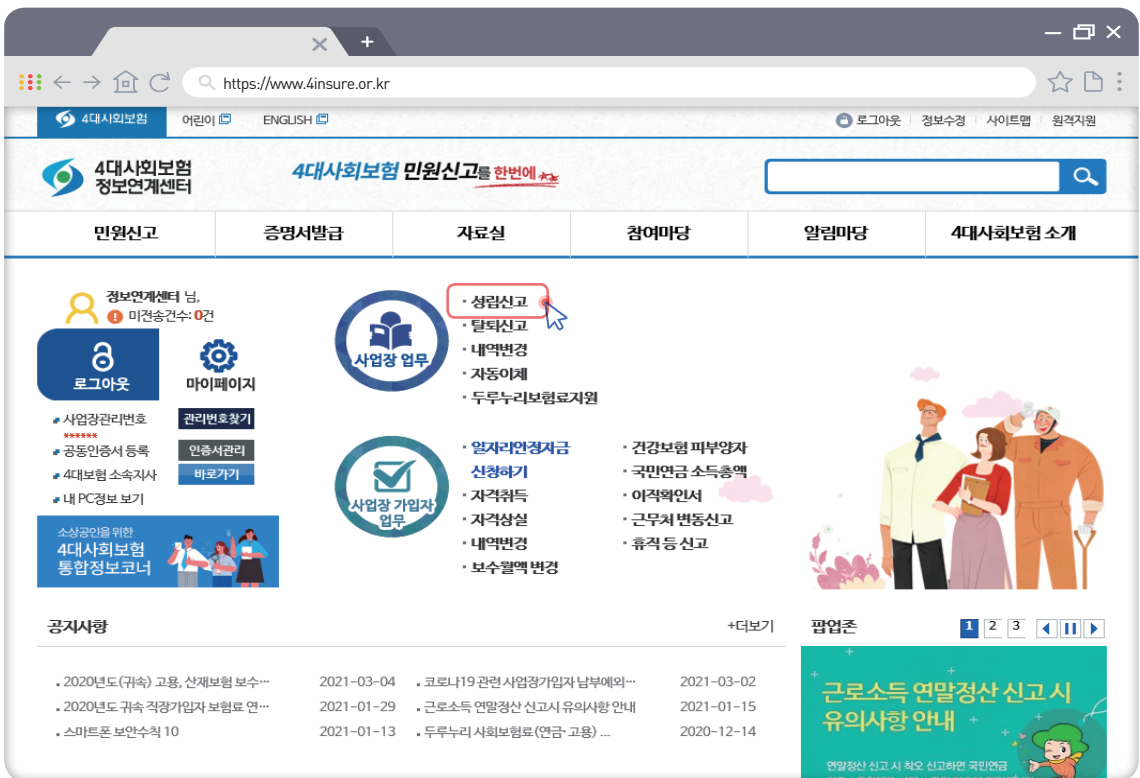
보험적용 구분	발번 주체	구분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준등록번호 사용
4대보험 공통사업장	정보연계센터	0	1
건강보험 고유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2	3
국민연금 고유사업장	국민연금공단	4	5
고용·산재 고유사업장	근로복지공단	6	7

사업장 성립신고서 작성방법

○ 성립신고 시기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직원이 채용된 시점	사업 시작일

○ 성립신고 방법



○ 작성 시 유의사항

- “원하시는 신고서를 선택하세요”의 신고할 보험을 각각 선택, 필수사항 모두 작성
-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 표시는 조건필수 입력항목입니다. 간단한 용어 안내는 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용어사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보연계센터 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미등록 | 관리번호찾기
공동인증서 등록 | 인증서관리
4대보험 소속자사 | 바로가기

민원신고

사업장

- 사업장 성립 신고
- 사업장 탈퇴 신고
-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 자영업자 신청
- 보험료지원 신청

가입자

- 자격취득 신고
- 자격사실 신고
- 내역변경 신고
-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
- 보수월액 변경
- 휴직 등 신고
- 근무처 변동 신고
- 미직확인서

민원신고 > 사업장 > 사업장 성립 신고

사업장 성립 신고

사업장 적용(해당)/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

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 현황]**을,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2이상인 때에는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기재합니다.

※ 원하시는 신고서를 선택하세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작성예시

작성 시 유의사항!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 표시는 조건필수 입력항목입니다. 간단한 용어 안내는 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용어사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사전

기본 사업장 관리 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공통 사업장(사업주)

명칭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주소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우편물 수령지 위 주소와 동일 주소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E-MAIL 전화번호(유선) - -

FAX 번호 - - 이동전화 - -

업종 업태 종목명
 주생 산품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방법

○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장 성립신고시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작성해야만 신고서 전송이 가능
- 자격취득 대상자가 여러명인 경우 가입자 1번부터 20번까지는 한번에 작성가능하며, 차례대로 가입자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및 전송

자격취득 신고
사업장(직장)가입자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근로자 중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량민원 신청이 필요하신가요? [대량민원접수하기](#)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 표시는 조건필수 입력항목입니다.
 간단한 용어 안내는 [?](#) 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용어사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가입여부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 <input type="checkbox"/>
소재지 ?	
전화번호	FAX번호
단위사업장 ?	영업소 명칭 ?

※ 취득대상 가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입자1에서부터 차례대로 가입자를 모두 입력한 후 [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20명까지 입력가능)
가입자1 선택됨

[가입자1](#) +

○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격취득일은 직원의 입사일을 작성
- 국민연금의 취득월 납부여부는 입사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연납부 대상으로 해당으로만 선택되고 2일 부터는 취득월 납부여부를 선택 가능
- 소득월액은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세금 제하기 전 금액으로 모든 근로소득을 작성
- 보험별 자격취득부호 및 고용보험 직종의 경우  을 클릭하면 팝업창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란에 '예'를 선택

건강보험			
자격취득부호	<input type="text"/>	자격취득일 (YYYY.MM.DD) ?	<input type="text"/>
보수월액 ?	<input type="text"/> 원		
보험료	감면 부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공무원/교직원	회계	<input type="text"/>	직종 <input type="text"/>
고용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월평균보수 ?	<input type="text"/> 원	자격취득일 (YYYY.MM.DD) ?	<input type="text"/>
직종	<input type="text"/> 행정경영금융		
1주(週)소정근로시간	<input type="text"/> 시간	비고	<input type="text"/>
계약직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계약종료연월 ?	<input type="text"/>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 부호 ?	<input type="text"/>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 사유	<input type="text"/>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	<input type="text" value="예"/>		
<p>○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취득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 등기임원 등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근로자성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주의 사항 근로자 30명 미만 고용기업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금지급내역이 있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입니다. 2011.1.1부터 허위(정정신고 포함)·지연신고 등 위반행위 확인시 주의·경고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는 알용근로자로 취득(고용)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신고일	<input type="text"/>		
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input type="text"/>		
<p>위와 같이 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신고대상자를 다 입력한 후에 저장을 누르세요.</p>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input type="button" value="취소"/>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확인서

모민원접수번호 [NPB20]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 받는 경우 추후 환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 별도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기준]

□ 지원 제외 사업주

1. 지급망월 직전 3개월간 평균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산업위기대응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은 300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 관계없이 지원 가능
2.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시급 9,160원 기준)(선일 월2,363,100원)**
3. 직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초과(과세소득: 개인 사업소득, 법인 당기순이익)
4.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5.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이거나 임금체불 중,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확정 사업주

□ 지원 제외 근로자

1. 사업주(법인 대표이상 포함) 및 해당 사업주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2. '22년도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시급 11,000원) 이상인 근로자(선일 284만원)**
3. **전년도 보수수준에 미달하는 근로자(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 시 지원가능)**
4. 1개월 미만 종사자 및 신청 당시 퇴사자

□ 유의사항

1.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코드) 발생시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 중단
2. 사업장(대표자, 사업장주소 등) 및 신청 근로자(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휴직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변경(휴직 등)신고
3. 보훈사무대행기관에서 안정자금을 신청하더라도 **환수금, 제재부가금은 지원 사업주에게 부과**되니 지원요건 확인 요망
4.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주는 공단의 지원 요건 등에 관한 사실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불응시 부당수급으로 간주하여 환수될 수 있음
5.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받은 지원금은 경비·청소원 등의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주민이 부담한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 될 수 있음
6.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설일부터 6개월 이상 지연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지원 중단
7. '23년에 확정된 '22년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의 110%(253만원) 이상이거나 주소정근로시간별 월평균보수 하한액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므로 월평균보수 또는 주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8. 부정수급 사업장은 다른 부처 지원금(보조금)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9. 환수금이 있는 경우 향후 지급받을 안정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공동주택 사업장 제외)

위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계속 진행하려면 아래의 "계속" 버튼을 클릭하세요

계속

취소

○ 민원처리현황 조회

- 전송한 민원신고서는 '민원신고 > 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처리결과 확인 가능

○ 민원처리현황 오류 발생 시

- '처리오류'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 사유를 확인 가능
- 오류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처리지사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 가능

* 신고일 : 전송 전에는 신고서를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로 표기되며, 전송 후에는 전송일과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 접수일/전송일 : 전송버튼을 클릭한 날로써, 실제 접수한 날이 아닙니다.

민원접수번호	민원업무 (서식)	신고일 (접수일/전송일)	처리대상	처리기관접수일	보험유형	처리여부	처리지사, 지사번호
NPH-20210309-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국민연금, 고용보험) 상세보기	2021-03-09 (2021-03-09)		2021-03-09	국민연금	처리오류	성남
				2021-03-09	국민연금공단	처리완료	성남지사
				2021-03-09	고용보험	처리완료	성남지사
					근로복지공단	처리완료	성남지사

증명서발급 신청방법

- 증명서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확인 > 신청
-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가능

The screenshot shows the 4Dae Insurance website interface. The navigation menu includes '민원신고', '증명서발급', '자료실', '참여마당', '알림마당', and '4대사회보험 소개'. The '증명서발급' menu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e menu, there are three sub-menus: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 이력조회', and '개별증명서(사업장명부)신청/발급'.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with a sub-header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신청/발급합니다.' At the bottom, there is a button labeled '확인' (Check) which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n orange arrow pointing to it.

The screenshot shows the application form for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The form is titled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and includes the following sections:

- 가입내역 확인서 청구내역**: Includes checkboxes for '사업장용' (checked) and '개인용' (unchecked). A note states: '※ 가입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는 각 공단으로 신청. (각 공단 연락처)'. A '신청' button is present.
- 확인자**: Fields for '성명' (Name), '주민등록번호', and '주소'. A note says: '회원정보가 자동 입력되며, 사실과 다를 경우 [회원정보]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중인 사업장**: Fields for '명칭' (Name), '사업장등록번호', and '사업장관리번호'. A note says: '정보연계센터 (이 부양대상사업장 포함)'. There are radio buttons for '확인용' (checked) and '이름순으로 출력' (unchecked), and another set for '주민등록순으로 출력' (unchecked).

At the bottom of the form, there is a '신청' button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n orange arrow pointing to it. Below the form, there is a notice: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을 청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증명서발급 신청방법

- 증명서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확인 > 신청
-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가능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신청/발급합니다.

가입내역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기초한 자료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터 발급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는 하단의 [발급 프린터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65[유료], 건강보험 1577-1000, 고용 산재보험 1588-0075

증명서의 방문 및 팩스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4대사회보험 기관의 지사 민원창구중 한 곳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찾기](#)

증명서 상세내역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4대기관이 모두 출력가능으로 바뀌면 증명서 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접수번호	신청내역	접수일자	처리기관	처리여부	발급일자
NPM2022080704952 2	가입자 명부	2022-08-07 10:55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산재) 근로복지공단(고용)	출력가능 출력가능 출력가능 출력가능	

※ 출력은 1회에 한합니다.
※ 처리오류 알림은 증명서에 해당 내용이 출력되지 않으니 다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3.3.일부터 증명서 출력하기 화면 내 웹팩스 발송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목록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사업장 및 개인 가입내역확인은 현재 시점으로부터만 확인 가능 (과거 시점 확인은 각 공단 문의)
- 가입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은 4대보험 기관 관할지사에 내방·팩스 신청 또는 EDI를 이용
- 4대보험 보험료 완납증명서 및 납부확인서 발급은 “4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을 이용



증명서들은 출력버튼을 누른 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처리여부가 모두 출력가능 상태가 되어야 출력 가능하며 '새로고침' 버튼을 이용하여 처리여부 상태를 확인하시고 출력 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2.3.3.부터 웹팩스 발송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편리하게 팩스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게 되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성립

1인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 ▶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채용후 사업장 성립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은 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로 신고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개인내역확인

증명서(가입자명부)에서 직원 선택 발급이 가능한가요?

-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에서는 직원 전체 가입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개별증명서(사업장명부)신청/발급에서는 발급 대상을 선택해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 자리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작성하실 때 입력하는 항목인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일주일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정액급여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



4대사회보험 통합정보코너

▶▶ 자주 문의하는 사항,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 정보 등

4대사회보험 통합정보코너

민원신고 | 증명서발급 | 자료실 | 참여마당 |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 소개

사업장 회원 로그인 | **개인 비회원 로그인**

사업장 업무

- 생립신고
- 탈퇴신고
- 내역변경
- 자동이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사업장 가입자 업무

- 알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
- 자격취득
- 자격상실
- 내역변경
- 보수월액 변경

증명서 발급

- 가입자 명부
- 가입내역확인서(사업장)
-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공지사항

· 찾아가는 4대사회보험 온라인 교육 오---	2021-07-26	· 민간인증서 서비스 오픈	2021-07-23
· 4대사회보험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	2021-06-30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가입자 남부예외---	2021-06-22
· [2021년 1월~3월] 4대사회보험 경보---	2021-04-26	· [2020년 10월~12월] 4대사회보험 경---	2021-04-26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취득
- 피부양자 자격상실
- 지역가입자 자동이체

민원처리 현황

민원신고내역 실시간 조회
포털서비스를 통해 신고한 모든서식

타기관 서비스 업무

- 완남증명서(남부확인서) 발급
-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 과과가임이력 조회
- 4대보험제도 문의

4대사회보험 기관지사찾기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이용안내 063-711-7800(유료) | 국민연금 1355(유료) | 건강보험 1577-1000(유료) | 고용보험(자격)-산재보험 1588-0075(유료) | 고용보험(급여) 1350(유료)

무단 이메일수집거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보공개제도 | 이용약관 | 도로명주소검색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리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4층 / 근무:월-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공휴일은 함니다)
Copyright © 2016 4 Social insurance information system. All Rights Reserved.

WA WEB ACCESSIBILITY | APPRIVACY | 4대사회보험 4대보험



4대사회보험 민원업무

▶ 가입대상, 내역변경, 가입해지, 보험료, 보험급여 등 안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민원신고 한번에

민원신고 | 증명서발급 | 자료실 | 참여마당 |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 소개**

사업장 회원 로그인 | 개인 비회원 로그인

4대사회보험 소개 > 4대사회보험 소개 > 4대사회보험 민원업무 > 가입대상 ★ 즐겨찾기등록

가입대상

4대사회보험 민원업무 관련 안내입니다.

사업장 | **사업장가입자** | 개인가입자

사업장 적용 대상 안내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당연적용 (의무가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사관 등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대수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별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건설공사 :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소개
- CI

사회보장제도 소개

- 사회보험 정의
- 우리나라 사회보험

4대사회보험 소개

- 사회보험 정의
- 주요특징
- 사회보험기관 및 주요업무
- 4대사회보험 민원업무
 - 가입대상
 - 내역변경
 - 가입해지
 - 보험료
 - 보험급여

처리현황 조회

이용자도우미

이용매뉴얼 (e-book)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

서식자료실

자주 묻는 질문



II

국민연금 제도 안내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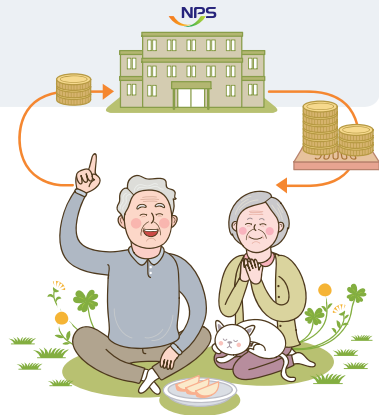
국민연금 제도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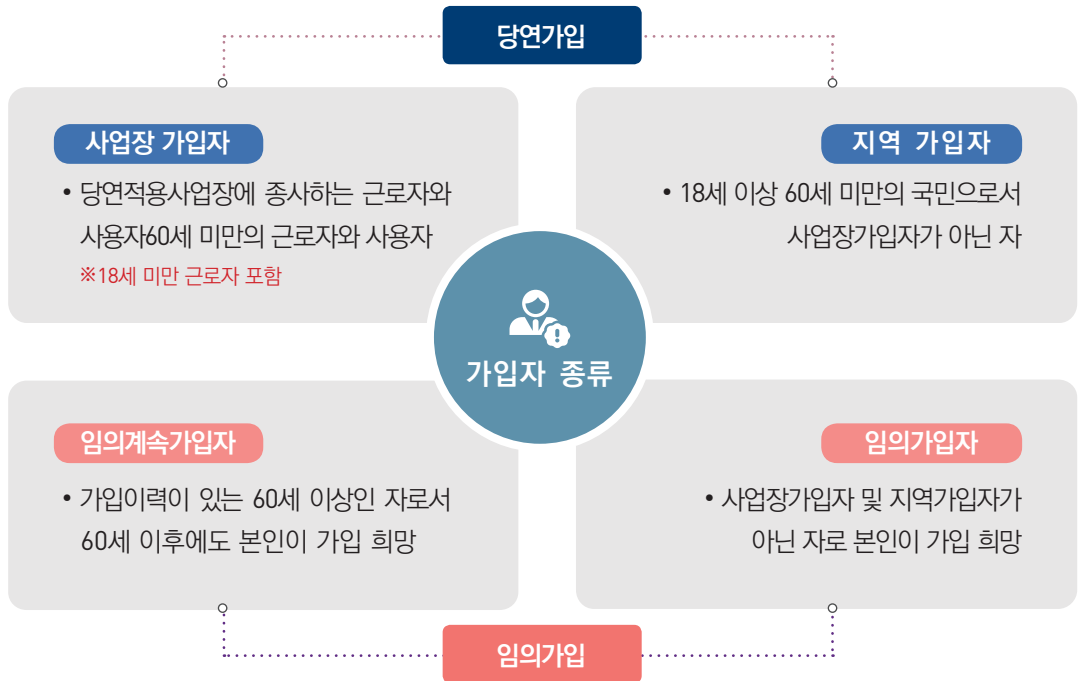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1

국민연금가입대상



2

외국인

- 외국인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 (내국인과 동일)
- 당연적용 제외

상호주의
相互主義

시행령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자¹⁾

외교관, 영사관원 등
조약(협약)에서 적용 배제



1) 불법체류자, 강제퇴거명령서 발급된 자,
제외되는 체류자격 있는 자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상호주의에 따라서 적용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입니다.

과거 베트남의 경우 사업장, 지역 모두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베트남 연금제도를 확인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2022.1.1.부터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으로 지역은 적용제의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제외 대상 국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 등에 관해 사회보장협정에 따름
 - (보험료면제 협정) 이중가입 면제만 규정(가입기간 합산 제외)
 - (가입기간 합산 협정) 이중가입 면제 + 가입기간 합산 모두 규정
 - ※ [공단홈페이지(www.nps.or.kr)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확인 가능



02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1

사업장 자격관리

사업장 신규 적용



-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대표자 1명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당연적용 대상
- 적용일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5일까지
- 유의사항
 - 사용자 포함 자격취득신고서도 함께 제출
 - 4대 사회보험 공동신고 가능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근로자 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적용방법은 제1회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이 어두운 난은 신고의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제1회 뒷면)

계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주관부서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상상용)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공	주거의 관할 (연방청)	(세금청별)	(계좌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	연령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전자고지	고지 [] 전자우편	[] 휴대전화	
신청	방법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장수포털)	4대 사회보험 합산신고
	수신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에 가입된 아이디)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 신청 [] 미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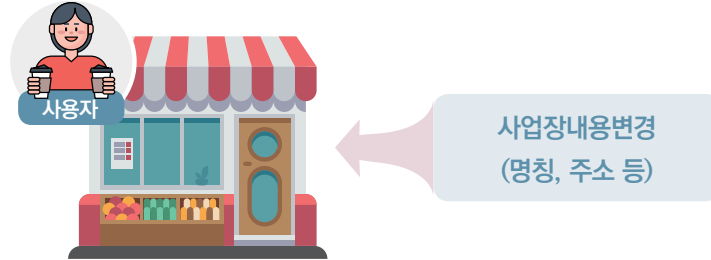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적용방법은 제1회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이 어두운 난은 신고의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제1회 뒷면)

※ 고용·건강보험의 경우 사회보험 관리청 자격취득방법, 보수율명, 발령일자(연월일)에 따른 연수 종료 일자(연월일)를 적으시오. (제1회 뒷면)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담당사업장 명칭	명칭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무소(연락처)
	직책			
연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1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2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3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4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5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6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7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8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9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10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11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12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13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14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15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16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17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18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19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20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21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22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23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24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25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26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27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28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29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30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31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32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33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34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35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36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37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38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39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40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41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42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43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44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45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46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47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48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49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50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51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52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53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54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55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56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57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58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59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60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61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62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63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64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65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66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67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68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69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70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71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72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73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74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75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76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77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78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79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80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81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82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83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84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85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86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87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88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89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90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91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92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93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94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95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96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97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98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99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100	성명	직책	연간보험료	고용보험·건강보험

사업장 내용변경



- 대상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변경된 사업장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5일까지
- 유의사항 :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내용변경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 탈퇴 후 신규적용하여야 함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당첨에 어두운 나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양력)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명칭		
	소재지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대표자)	성명	
사용자 (대표자/ 공동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 항목	변경일(YYYY.MM.DD)	변경 전
	성명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변경 항목	변경일(YYYY.MM.DD)	변경 내용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그 밖의 사항			
건강보험증 수령지	[]사업장 주소지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신청사장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장 탈퇴



○ 대상

- 휴업 폐업으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
-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 탈퇴일

- 휴업일 당일, 폐업일의 다음날 (폐업일이 초일이면 폐업일로 탈퇴 가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최종 상실일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 유인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사가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채지 않습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사용자/대짜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신고(신청) 사유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input type="checkbox"/> 폐업 <input type="checkbox"/> 종폐합 <input type="checkbox"/> 사업 종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국민연금·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없음		
	고용·산재보험(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사유 발생일자(YYYY.MM.DD)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통폐합 시 흡수하는 사업장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	근로자 수	소재지	
	신재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고용/산재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거래은행	은행명	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입 금될 계좌입니다.
	계좌번호	계좌번호	(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계좌번호	

2

사업장 가입자 자격관리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 신고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
- 18세 미만 근로자(본인신청)
-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60시간(주15시간)이상** 근로하는 자
-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 대학강사(3개월 이상 근로)
 - 근로자적용희망자(3개월이상근로 + 사용자 동의)
 - 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 이상 근로 + 본인신청
 - 1개월 이상 근로 제공 +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자(2022.1.1.시행)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60시간이상)**인 자

※ (건설일용) 월8일 이상 / (일반일용) 월8일 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자(2022.1.1. 시행)

*220만원이상: 보건복지부 고시(매년 변동될 수 있음)

사업장가입자 상실

○ 신고대상

- 사용관계 종료(퇴사)
-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 60세 도달(60세 생일)
- 사망
- 60세 미만으로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 해제된) 때
-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60시간 미만 근무, 무보수 대표이사 등)
- 다른 공적연금 가입
 -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제외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사업장 가입자)

납부예외(재개)

○ 신고대상

- 근로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소득이 중단되고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납부예외 신청 시에는 증빙자료 불필요
 - * (기타휴직) 휴직기간 동안의 소득이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미만이어야 함

○ 유의사항

-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면 납부재개 신고해야 함
- 개인사업장 사용자, 임금이 체불된 경우, 해외파견 근로자는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아님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아닌 사례

- 임금이 체불된 경우
- 연봉제 계약 체결한 자의 급여산정 시 소득이 없는 월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휴업·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휴업수당 등 급여가 휴업·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이상인 경우
- 개인사업장 사용자
- 파견근로자로서 국외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기초소득월액 결정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신고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 절사

(사용자) 농업·임업·어업 소득과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을 합산한 소득
 (근로자)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비과세 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을 뺀 소득

※비과세소득: 10만원 이내의 식대, 정해지지 않은 수당이나 성과급 등

기초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적용기간
553만원	35만원	2022. 7월 ~ 2023. 6월

취득시
(재개)

- (소득 산정) 입사(복직) 당시 약정된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 ÷ 365 × 30
- (적용 기간) 최초 정기결정 될 기초소득월액이 적용되는 월의 전월까지

* 기초소득월액 상한액 초과자와 하한액 미만자: 매년 7월 1일 재결정

가입
기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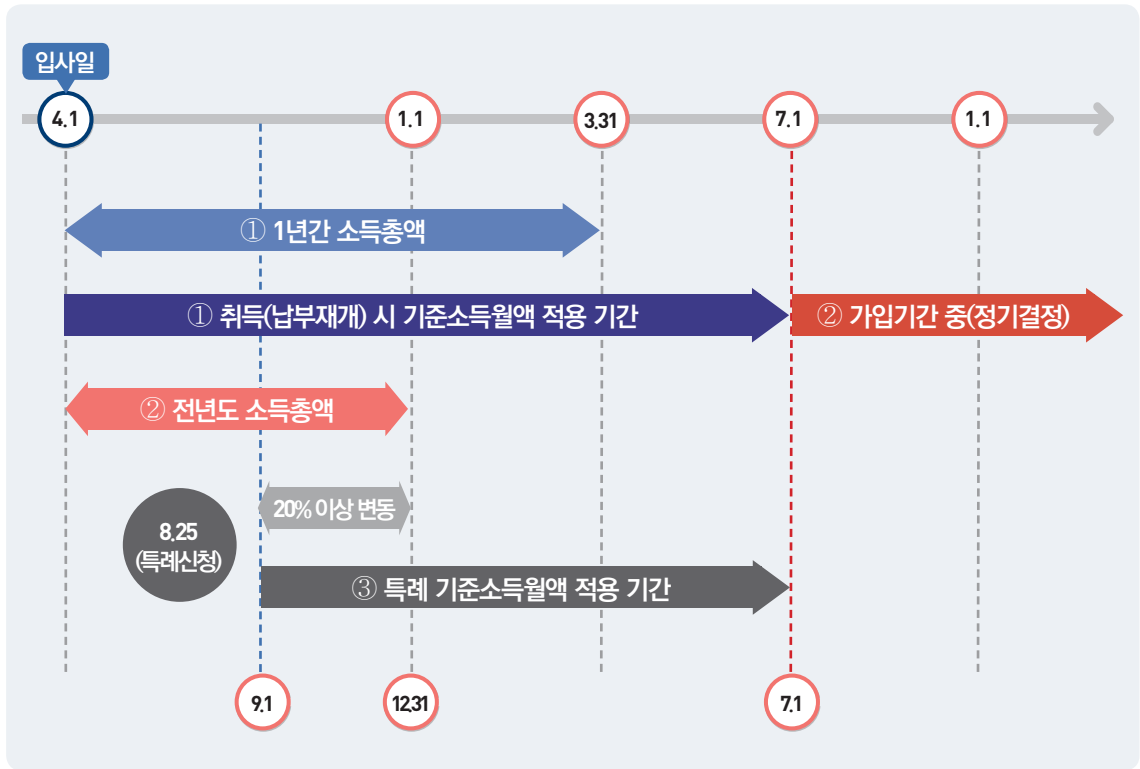
- (소득산정) 전년도 중 사업장 종사 기간에 받은 소득액 ÷ 종사일수 × 30
- (적용기간)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 (결정 방법)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 소득총액 신고에 의한 결정

특례
신청

- (적용대상) 실제소득이 기초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동이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 (적용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특례 적용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기초소득월액 적용기간



4.1. 입사한 사람의 취득 시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 ① 입사한 날인 4.1.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다음 연도 3.31.까지 발생할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결정합니다.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4월부터 다음 정기결정이 적용되는 다음연도 7월 전(6월 말)까지 적용합니다.
- ② 이 가입자가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둘째 해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전년도 근무기간인 4월부터 12월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정기결정을 한 후, 당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 ③ 마지막으로 소득의 급격한 변경으로 8.25. 특례 신청을 하고 신청월 다음달인 9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소득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되었다면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특례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신청서 작성 방법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국민연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현재 기준소득월액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	근로자 등의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보수월액	보수 변경 월	변경사유	변경 후 월평균보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변경사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신청(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사용자 서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소득 변동 입증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용자는 변경 신청 당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입증서류 없어도 인정

• 정산결과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징수나 과오납금 충당·반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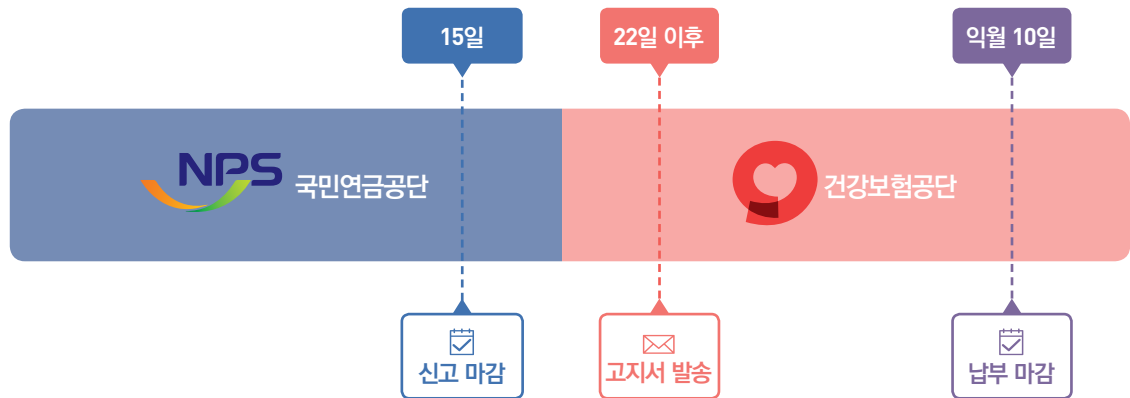
작성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 2가지!

첫째, 관련 입증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 등의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3

정수 관리



연금보험료 산정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9%)

* 근로자의 경우 : (사용자) 4.5% + (근로자) 4.5%

○ 당월 연금보험료 고지

- 당월분 금액 + 소급분 증가액 - 공제금액 - 수납총당액
- ☞ 소급분 감소액은 자격변동 해당월에서 차감

○ 납입고지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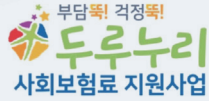
-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
- ☞ 16일~말일 신고분은 익월분 고지에 합산

국민연금 보험료 자동이체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시면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연체금 일할 계산

-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는 1일 경과마다 미납보험료의 1/1,500가산 (2%이내)
- 납부기한 경과 30일초과 시는 1일 경과마다 미납보험료의 1/6,000가산 (5%이내)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사각지대 축소**

○ 지원 대상

- 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
-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미만 & 재산 및 종합소득기준 충족**(6억미만 & 3,80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일용근로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지원 금액

-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80%**

○ 지원 방법

- 당월분보험료를 **법정납기까지 완납** 시 익월보험료에서 지원금 공제

○ 지원 기간

-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지원(2018.1월분 이후)

5

신고 시 유의 사항

○ 공통 신고

- 취득, 상실 신고 및 가입자변경사항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즉시 연락가능한 전화, 팩스번호 기재

취득 신고 시 유의사항



-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 납부희망(1), 납부미희망(2)을 반드시 기재
☞ 건강보험은 2일 이후 취득 시 보험료 부과되지 않음

상실 신고 시 유의사항



- 퇴사일의 다음날로 상실일, 상실일이 2일 이후는 고지
- 초일취득 당월 상실의 경우 납부희망여부 반드시 기재



- 해당연도 보수총액·산정월수 기재
- 매년 2월 보수총액 신고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은 기재 불필요



- 상실사유, 기호 반드시 기재 사유에 따라 구직급여지급
- 착오 신고 시 고용보험에 직접 문의 요망

03

국민연금 혜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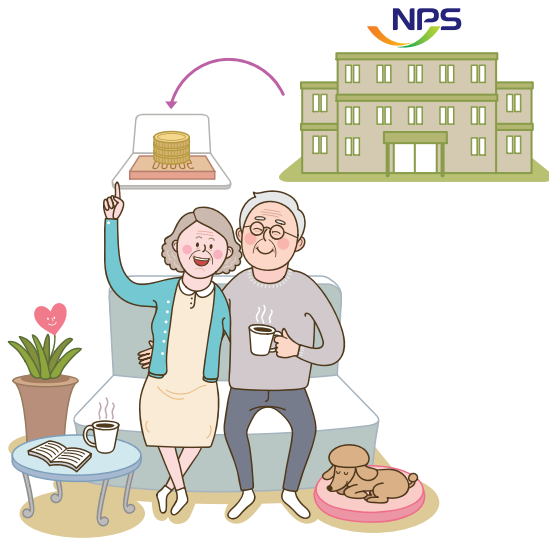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국가책임으로 운영하므로 **안전**

물가가 올라도 연금액을 **실질가치 보장**

지급된 급여를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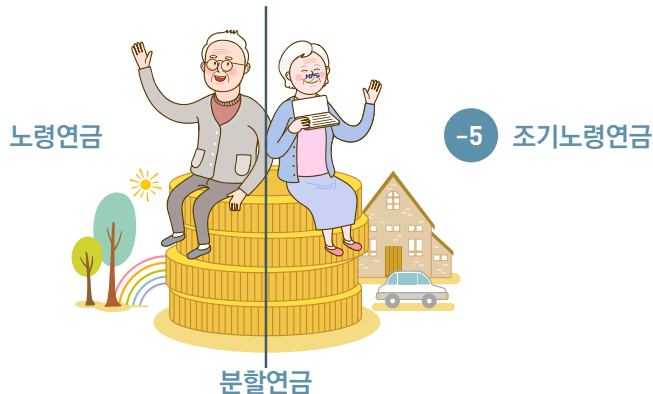


(참고)
통계현황

- 2021.10월 기준 가입자 22,158,912명
수급자 5,766,783명
- 2021.12월 기준 기금 948.7조원, 누적수익률 6.76%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가입기간(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



○ 수급 요건

-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수급 연령 도달
-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수급 연령 5년 미도달 + 소득있는업무 비종사 + 청구

소득 있는 업무 비종사에 해당되려면?

2022년 사업소득 기준으로 월평균액이 2,681,724원 이하여야 함

- (분할연금) 이혼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 전 배우자의 가입(납부)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 본인 수급 연령 도달

출생연도별 급여지급연령

출생연도	지급연령	출생연도	지급연령
~ '52년	60세	'61 ~ '64년	63세
'53 ~ '56년	61세	'65 ~ '68년	64세
'53 ~ '60년	62세	'69년 ~	65세

장애연금

-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은 자에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른 연금액을 지급

수급 요건

초진일 요건

-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수급연령 생일 전날까지 있어야 함



납부 요건

- 초진일 당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① 가입기간 10년 이상
 - ②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③ 초진일로부터 역산 5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전체 체납기간이 3년 미만)



장애결정 기준일

- (장애결정기준일)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청구일
 - ① (완치 상병) 완치일
 - ② (미완치 상병)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또는 청구일



장애 등급

- (장애등급) 1급 ~ 4급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가 사망하거나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 수급 요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권자의 사망
- 가입자(였던자)의 사망으로서 사망 전 가입기간이

① 10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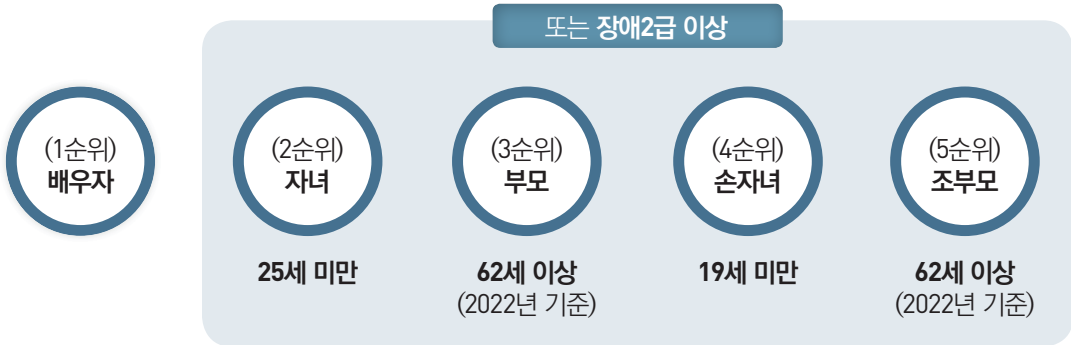
②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③ 초진일로부터 역산 5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전체 체납기간이 3년 미만)

※ 단, ②와 ③의 경우 사망일이 공무원 등 재직기간 국외이주, 국적상실 중에 있으면 유족연금 지급하지 않음

○ 유족의 범위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서 아래 중 최우선 순위자



반환일시금

- 가입자(였던자)에게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하고 향후 재가입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가입자(였던자) 또는 그의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 수급 요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도달
- 가입자(였던자)가 사망
 -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유족의 범위는 유족연금과 동일)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장제부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일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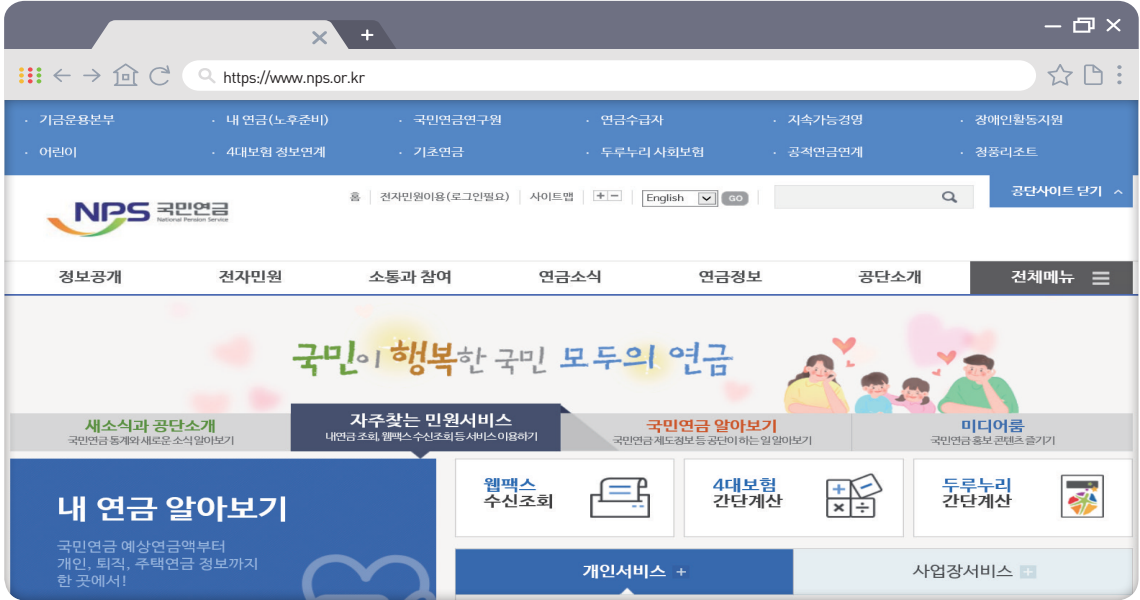
○ 수급 요건

-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에서 정한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
- 지급한도를 정해놓고 있어 반환일시금보다 같거나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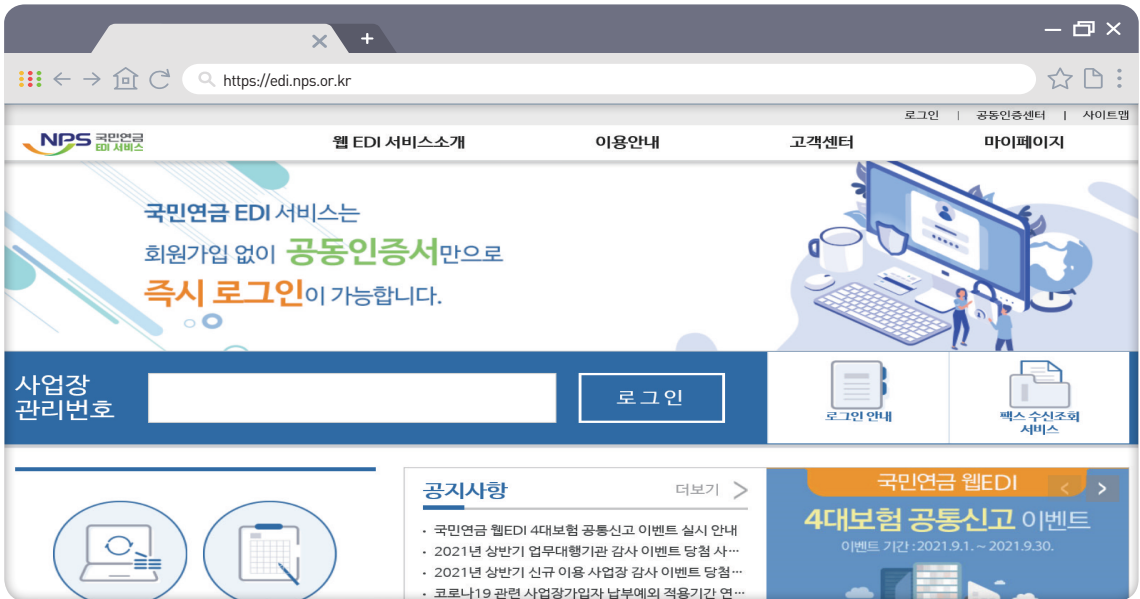
04

국민연금공단 안내

○ 국민연금 제도안내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고객센터(1355, 유료)



○ 국민연금 웹 EDI(https://edi.nps.or.kr)



II. 국민연금 제도 안내



III

건강보험 제도 안내

01

국민건강보험 제도

목적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의료 욕구(Needs) 충족
 - 국민의 의료비 문제 해결 →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
 - 소득 재분배와 위험 분산 → 사회적 연대 강화, 사회통합 도모

기능

- 건강보험의 사회 연대성
- 위험 분산과 소득 재분배 기능의 수행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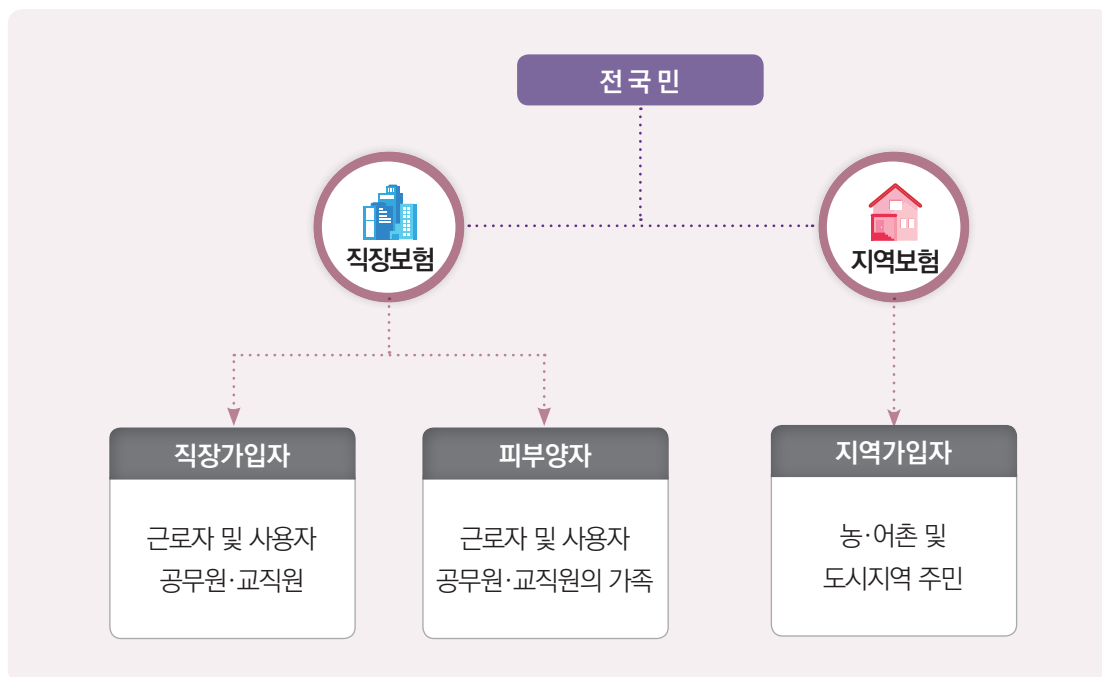
건강보험

- 법에 의한 강제 가입
-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균등 급여
- 정부 또는 공공기관(비영리)

민간보험

- 선택적 임의 가입
-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 수준에 따라 계약된 차등 급여
- 민간보험회사(영리)

적용체계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적용제외

- 당연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단, 아래의 자는 제외함
 - 위 대상자 중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자
 - 위 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사용자 신고사항

○ 주요업무

- 사업장 신규 적용, 변경, 탈퇴 신고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변동) 상실 신고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기재사항 변경 신고
- 가입자 보수의 신고 및 보수월액 변경 신고
- 매년 3월10일까지 전년도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신고
- 퇴직, 퇴사한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수 총액 신고
- 보험료 공제 및 납부
- 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 기타 공단이 신고 또는 제출 요구한 관련 서류 제출

※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의 보존(법96조의2) : 작성된 날로부터 3년(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5년)

유의사항

지연 신고 시 지역보험료 소급 부과로 가입자 불이익

사업장 적용 신고

◎ 적용대상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 법인 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당연가입 대상임(단, 무보수 대표자는 **가입제의 신청서 제출 시 제외**)

◎ 적용일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예외) 사업장 적용일이 공단 신고일 대비 6개월 이상 소급하여 신고하면서 사용자가 고용관계 성립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서 또는 사업소득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고용관계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적용일이 됨
 - 단,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일 또는 개업 연월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나 납세사실증명서(세무서 발급)를 제출할 경우 가능함
- 사업장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 사업장 합병 또는 분할 일자

◎ 제출서류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를 동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제출하도록 안내

◎ 신고기한

- 사용자(기관)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

⊙ 변경대상

- 사용자 성명, 사업장 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건설일용사업장의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자등록 또는 경과조치 여부 등에 변경(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

⊙ 변경일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를 공단 지사에 접수한 날

⊙ 제출서류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 공사계약서(사후정산 여부 포함, 만약 미포함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노무비 산출내역서가 포함 되어있어야 함)

⊙ 신고기한

- 사용자(기관)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탈퇴 신고

탈퇴대상

- 휴·폐업 사업장 및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직장가입자 대상자가 되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합병·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
- 대표자 사망 사업장

탈퇴일

- 휴·폐업 사업장은 휴·폐업 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 다음날
단,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로 함
-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조업 종료일의 다음날
- 사업장 합병·통합은 합병(통합)계약서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합병(통합)일자
- 대표자 사망일의 다음날

제출서류

- 사업장탈퇴신고서
- 휴·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연계시스템 조회 가능)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합병(통합)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통합)의 등기를 한 법인등기부등본

신고기한

- 사용자(기관)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 된 사람 및 군간부 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교직원
5.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교직원 중 1개월 동안의 근로 일수가 8일 미만인 근로자
6. 비상근로자(일용 근로자는 제외한다)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7. 비상근교직원(일용 교직원은 제외한다)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공무원 및 교직원
8.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9. 근로자가 없거나 6에 해당하는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10.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11.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자

※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장 사용자도 함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함

☑ 구 분

- 자격 취득(변동) 시기

근로자 사용자

-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된 날
-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된 날

공무원 교직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단,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 교원은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고용)계약이 있으면서 1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고용)계약된 자는 그 근로(고용)를 개시한 날
- 근로(고용)계약은 없으나 실제 1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근로시간도 월 60시간 이상인 자는 그 근로(고용)를 최초로 개시한 날 ☞ 사후 취득

유공자등 의료보호 대상자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 신청한 날
- 적용사업장에서 근무 도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 도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반드시 피부양자 유무를 확인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 있음)를 제출하도록 안내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이혼·사별한 직계비속, 배우자의 계부모
- 형제자매 원칙적 제외(단,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금융(이자, 배당) 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요건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재산과표 5.4억 이하, 5.4억 초과~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 재산과표 1.8억 이하
- ※ 재산 종류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 피부양자 취득, 상실 신고(가입자와 별도로 신고할 경우)

구분	피부양자 취득	피부양자 상실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자격 취득 (상실)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와 동시에 신고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취득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 후에 별도로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을 넘겨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날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 가입자(피부양자)가족(혼인)관계 증명서 ※ 전국민세대구성정보만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 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중 1부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류)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 주민등록 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 미혼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 시
 - ☞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 신청서

📅 신고기한

-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상실대상

- 퇴직 또는 사망한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 적용배제 신청자
- 국적을 잃은 자

자격상실시기

-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된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
 - 신고서 입력 시 자격상실일(퇴직일의 다음날, 사망일의 다음날 등)을 입력 함
 -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직장가입자 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로 취득 불가)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제출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기타 의료급여증 사본,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배제 신청서 등

신고기한

- 사용자(기관)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

○ 근무처변동

- 자격취득·상실 절차 없이 자격 연계
 - 인사이동으로 신분의 변동 없이 근무처가 변경된 공무원
 - 모사업장 내의 인사 이동으로 전출·전입된 근로자 또는 교직원
 - 단위 사업장 내의 인사 이동으로 전출·전입된 근로자 또는 공무원·교직원

○ 근무내역변동

- 보험료 감면 또는 감면 해제
 - 해외근무, 현역 군입대, 보충역·상근예비역의 교육 소집기간, 시설수용, 도서벽지 근무·거주, 감면 해제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서
- 기타 근무내역 변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험료 감면(면제) 내역

구분		경감비율	비고
국외 근무자 (북한지역 근무자 포함)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감면 50%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면제	
현역병·재소자 시설수용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면제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면제	
상근예비역·보충역(교육소집 기간만 해당)		면제	
도서·벽지 근무 또는 거주자		감면 50%	
군인		감면 20%	

직장보험료 부과

$$\text{건강보험료} = \text{보수월액} \times \text{보험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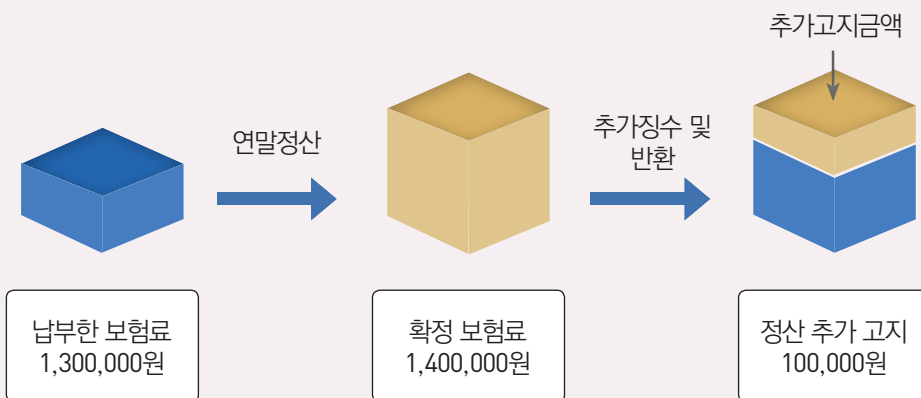
- 보수월액(월평균 보수) : 연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보험료율 : 6.99%(장기요양 보험료율 : 12.27%) ☞ 2022.1.1.부터 적용
- 직장 건강보험료 상·하한
 (상한) 7,307,100원(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30배)
 (하한) 19,500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직장보험료 연말정산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3월10일(개인사업장 사용자는 5월31일)까지 전년도 중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는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신고 서류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직장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 개선

- 100인 이상 사업장 보수변경 신고 의무화 시행(시행령 제36조 개정, 2016.1.1. 시행)
- 개선 내용
 -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시 매월 15일까지 보수변경 신청(당월 정산, 부과) 의무화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개정
 -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매월 15일까지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2. 해당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 적용
 - 보수월액 변경사유 발생 월 또는 변경신청 월부터 반영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

🕒 적용대상

- 본사 및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 다만, 근로계약 상대방(사용자)이 동일하고 건설현장이 동일하면 다수의 공사 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으로 적용

🕒 적용기준

〈건설현장의 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 공사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 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 계약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월 8일 이상 근로)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 제출서류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일괄 경정고지 신청서
- 공사계약서(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 및 사후정산 여부 포함)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 신고기한

- 사용자(기관)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설일용근로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

○ 적용대상

-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2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사람
- 월 8일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 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취득신고

- 1개월 이상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 월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취득 신고
- 1개월 미만 계약·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시 취득 신고

○ 상실신고

- 1개월간 8일 미만 근로 또는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경우

○ 신고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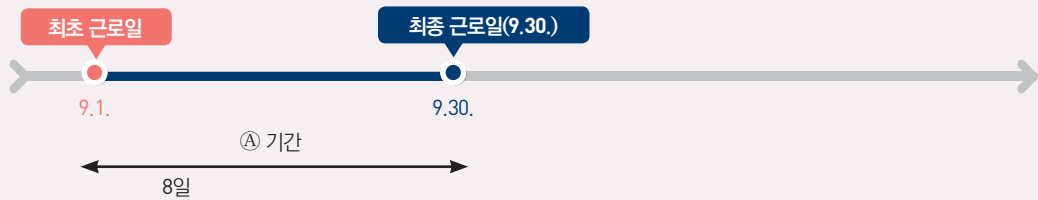
- 모든 자격변동(취득, 상실, 보수변경 등) 신고는 다음달 5일까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예시

☞ 사례 ①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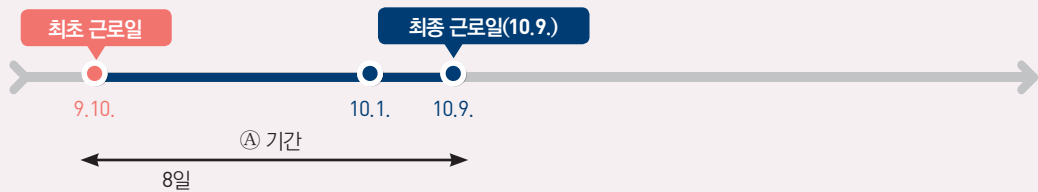
- 취득일 : 9.1.

- 상실일 : 10.1.

- 최초 근로일 부터 1개월 되는 날(9.30.)까지 근로하여 가입대상

※ 만약, 최종 근로일이 9.29.인 경우라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대상 아님

☞ 최초 근로일(월 중)



- 취득일 : 9.10.

- 상실일 : 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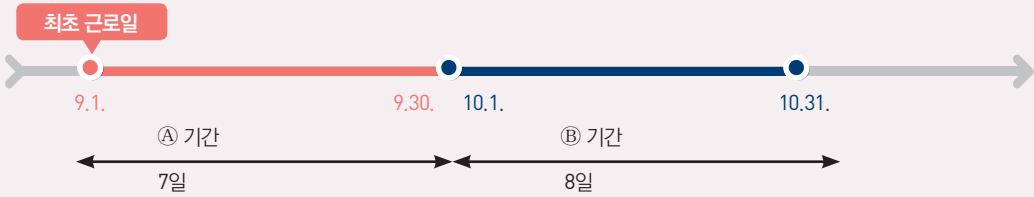
- 최초 근로일 부터 1개월 되는 날(10.9.)까지 근로하여 가입대상

※ 만약, 최종 근로일이 10.8.인 경우라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대상 아님

☑ 사례 2

- ㉠ 기간에 8일 미만이고 최초 근로(고용)일 익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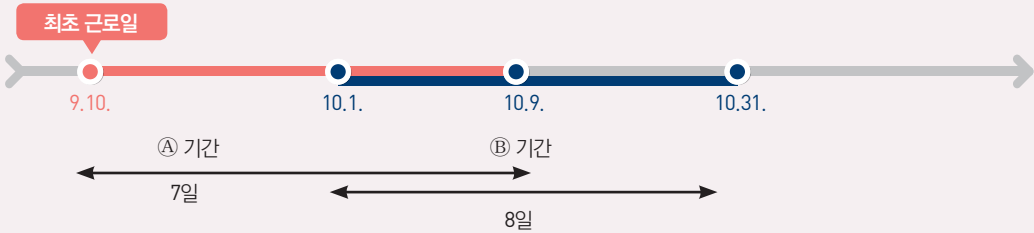
☞ 최초 근로일(월 초)



- 취득일 : 10.1.

- 상실일 : 11.1.

☞ 최초 근로일(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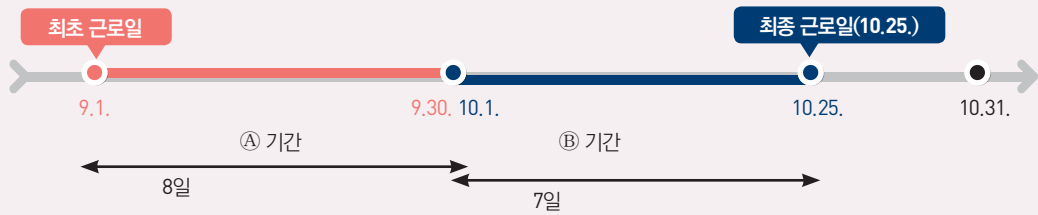
- 취득일 : 10.1.

- 상실일 : 11.1.

☉ 사례 ☹

- ㉠ 기간에 8일 이상 근로한 후, 최초 근로(고용)일 익 월에 8일미만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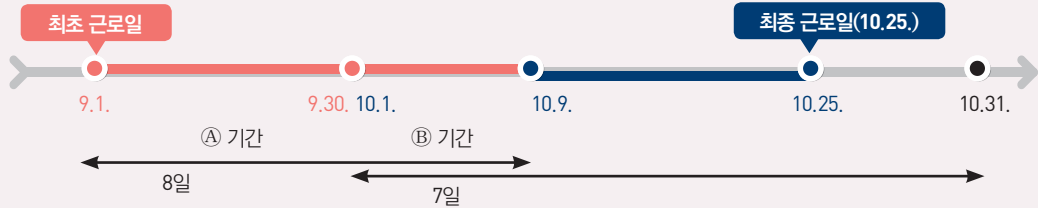


- 취득일 : 9.1.

- 상실일 : 10.1.

※ 최초 근로일이 월 초일(1일)인 경우 최초 근로일 익 월 초일(1일) 상실

☞ 최초 근로일(월 중)



- 취득일 :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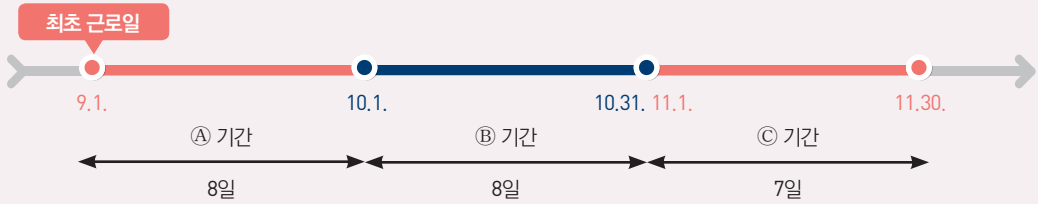
- 상실일 : 10.26.

※ 최초 근로일이 월 중일인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사례 4

• 자격취득 하여 계속적으로 가입 후 최종 근로월 초일부터 말일 간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일(월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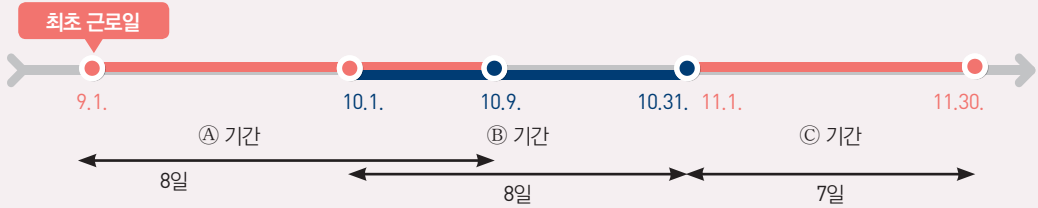


- 취득일 : 9.1.

- 상실일 : 11.1.

※ 최초 근로일이 월 초일(1일)인 경우 최초 근로일 익 월 초일(1일) 상실

최초 근로일(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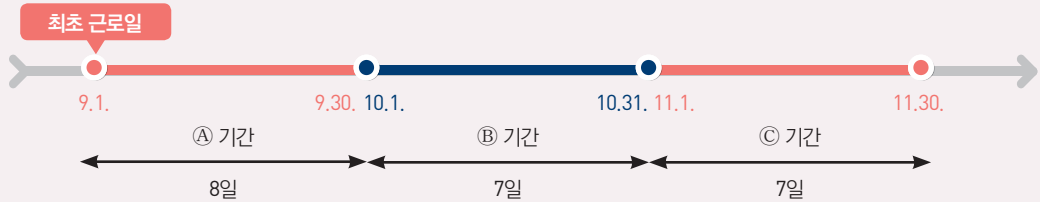
- 취득일 : 9.10.

- 상실일 : 11.1.

☉ 사례 5

• 자격취득 후 최초 근로일 익 월부터 8일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 취득일 : 9.1.

- 상실일 : 10.1.

☞ 최초 근로일(월 중)



- 취득일 :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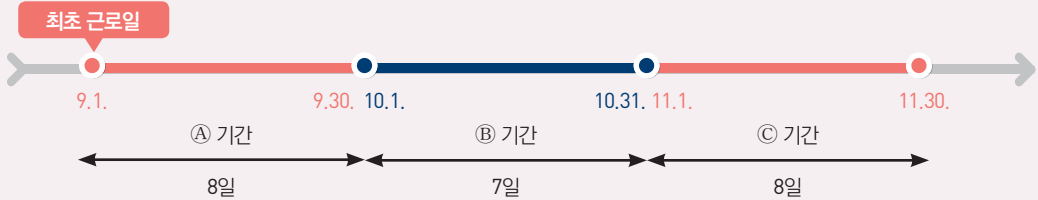
- 상실일 : 10.26.

※ (A) 기간에 8일 이상 근로한 후, 최초 근로(고용)일 익 월에 8일미만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사례 6

- ㉠기간 8일 이상, ㉡기간이 8일 미만, ㉢기간이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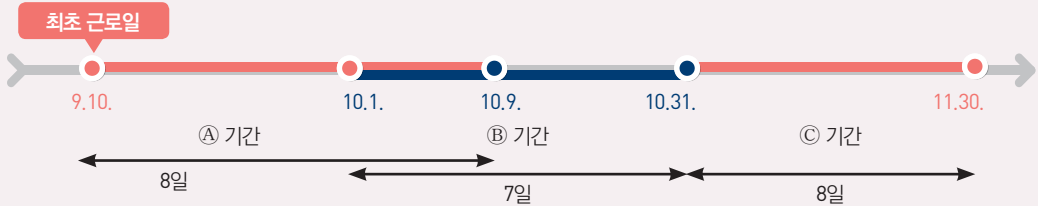
☞ 최초 근로일(월 초)



- 취득일 : 9.1. 상실일 : 10.1.

- 재취득일 : 11.1. 상실일 : 12.1.

☞ 최초 근로일(월 중)



- 취득일 :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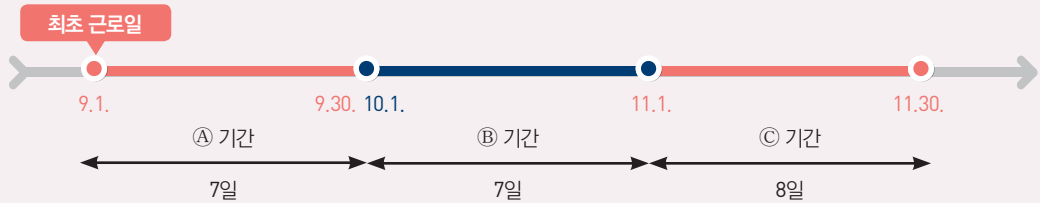
- 상실일 : 12.1.

※ 최초 근로일이 월 중인 경우 ㉡기간이 8일 미만이라도 자격취득 후 계속적으로 가입대상 (부과 대상 월(10월)의 실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 부과)

☉ 사례 7

- ㉠와 ㉡기간이 8일 미만이고, ㉢기간이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 취득일 : 11.1.

- 상실일 : 12.1.

☞ 최초 근로일(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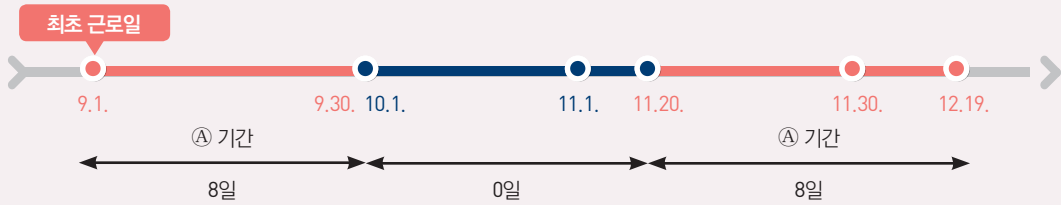
- 취득일 : 11.1.

- 상실일 : 12.1.

☞ 사례 3

- ㉠기간 취득, 상실 후 상실일 다음달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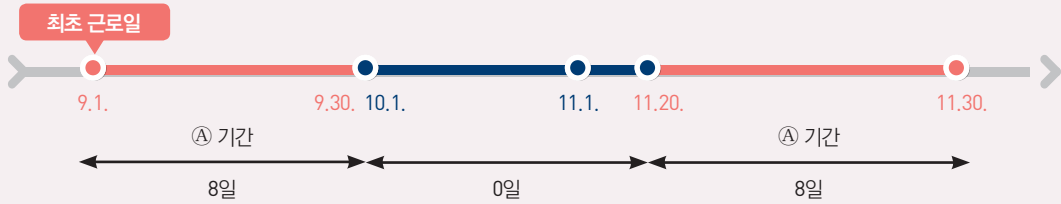
- 취득일 : 9.1. 상실일 : 10.1.

- 재취득일 : 11.20. 상실일 : 12.20.

※ 취득일 11.1.로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

※ 최초 근로월부터 매월 1일 이상을 근로하여야 연속근로

☞ 최초 근로일(월 중)



- 취득일 : 9.1.

- 상실일 :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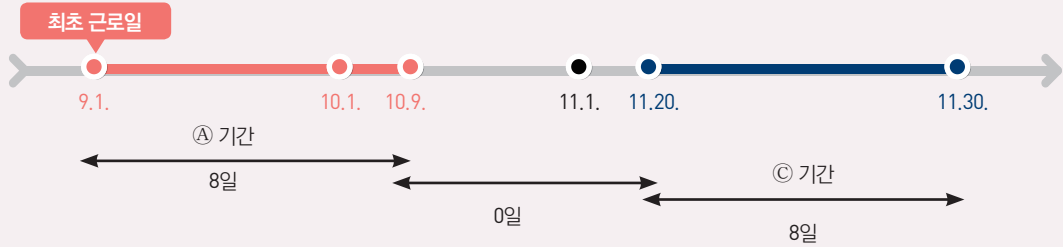
※ 취득일 11.1.로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

※ 11.20.~12.19.까지 근로하여야 1개월 이상 근로임

☉ 사례 ③

- ㉠기간 취득, 상실 후 상실일 다음달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중)



- 취득일 : 9.10. 상실일 : 10.10.

- 재취득일 : 11.1. 상실일 : 12.1.

※ 취득일 11.20.로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

※ 9월, 10월, 11월 연속 근로로 11.1.취득



☺ 사례 ☺

- ㉠기간 8일 이상 근로한 후, 최종 근로일 익 월에 근로가 없고, 그 익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중)



- 취득일 : 9.10. 상실일 : 10.10.

- 재취득일 : 12.5. 상실일 : '21.1.5.

※ 최초 근로일부터 매월 1일 이상을 근로하여야 연속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

취득대상

대 상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 동포, 주민등록 신청한 재외국민

자격취득일

- 직장가입자 : 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된 날
- 피부양자 : 외국인 등록일 또는 국내 거소 신고일,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청일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증빙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제외(2007.7.31. 시행)

제외대상

대 상

-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제출서류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확인서, 보험계약서), 프랑스 : 국적확인, 일본 : 건강보험증 사본
-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자격상실일

- 신청한 날. 다만, 자격취득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 14일 이후인 경우는 자격 상실신고일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2009.9.19. 시행)

제외대상

- 직장가입자 외국인 중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본인의 신청에 의해 공단에 가입 제외 신고한 경우
 - ※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득일, 14일 이후 : 신청일
 - ※ 노부모가 있는지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제외됨



- 재가입 하려면 위의 체류자격(3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야 함
 -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

사업장 지도점검

○ 직장가입자의 보수 범위

$$\text{보수} = (\text{근로소득} - \text{비과세소득}) + \text{국외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① 식대 : 월 10만원 비과세 (식사 등 음식물 제공 x)
- ②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 월 20만원, 다만 다음 사안 충족
 - (1) 본인 소유 차량(차량등록증 상 부부 공동 명의만 가능)
 - (2) 사용자의 업무 수행
- ③ 보육(출산)수당 : 월 10만원(만 6세 미만)
- ④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 보수에 제외되나, 현금 수령 대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납부하는 경우와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의 경우 보수에 포함
- ⑤ 출산·전 후 휴가기간 중 급여 : 보수에 포함되나 고용보험 급여는 제외

○ 자료 요구 및 확인 서류(3개 년도)

- 임금(급여) 대장 또는 연말정산 현황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비과세 항목 확인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개인사업장)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무일수 및 노무비 지급액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손익계산서 부속 계정별 원장을 통해 개인사용, 증빙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 → 시간제근로자
- 급여 입금 통장 등 임금 지급 관련 서류 → 가공 인물여부 확인
-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공제 서류 등

직장자격 허위신고 사용자 가산금 부과

- 허위(위장) 취득자 발생 원인 : 부과체계 이원화 → 도덕적 해이 현상 초래
- 가산금 부과 제도(법 제78조의2) 도입 → 2016.9.23. 신고 건부터 적용
 - 가산금 성격 :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행정 제재금 성격임
 - 가산금 부과 대상 : 거짓 신고한 사용자
 - 가산금은 허위취득 기간 중 (지역보험료 총액 - 직장보험료 총액) x 10%
 - 대상 :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단에 신고한 경우

민원서류발급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업무 목적: 가입자 명부 발급신청서, 신청인(사업장가입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이 사업장 대표자(가입자)가 아닌 경우 발급 대상자 각 개인의 위임장
 - 신청인이 대표자일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이 직원일 경우 : 대표자 및 신청 직원 신분증 사본
 - 군 기관에서 가입자 명부 신청 시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해당 기관의 전결 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전결권자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 업무 목적 외(타 기관 제출 등) : 가입자 명부 발급신청서, 가입자 명부 발급위임장, 위임자들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입자와 상실자 각 개인의 위임이 필요
 - 신청인이 제 3자인 경우는 발급 목적과 관계없이 가입자의 위임장 필요

임의계속가입자

- **배경** :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 **대상** :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 법 제110조 제1항, 2018.1.16. 개정, 2018.7.1.시행
-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가입자 본인) 신청
- **적용기간**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36개월간
 - ※ 2018.1.1.부터 24개월 → 36개월로 적용기간 확대 시행됨
- **보험료** :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x 보험료율
 - ☞ 산정된 보험료에 50% 경감 후 부과(전액 본인부담) + 소득월액보험료
- **취소** : 최초로 내야 할 임의계속 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경과 시까지 미납 시 취득 취소
- **신청방법** : 방문,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곤란 시 FAX, 우편, 유선 신청 가능

4대 사회보험료 고지·납부 등 편의

○ 4대 사회보험료 납입 고지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 발부(매월 25~30일)
- 보험료 결정 : 건강·요양(건강공단), 연금(연금공단), 고용·산재(근복공단) → (고지) 건강공단
- 공단에 등록된 기본주소지로 고지서 발송
 - ☞ 보험별 주소 상이(건강 → 연금 → 고용 → 산재 순)
- ※ 기본주소지 외 주소로 송달 : 송달지 변경 신청(사업장 → 공단) → 방문, 팩스, 징수포털 등
 - ☞ 통지 내용 : 보험료의 종류,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산출내역

○ 합산고지 제도

- 4대보험 개별 고지서를 「한장」으로 수령
- 4대보험 중 2개 보험 이상 가입된 사업장
 - ※ 사업장관리번호·대표자·납부 방법이 동일한 경우 신청
 - ☞ 신청방법 : 유선, 우편, 팩스, 내방

○ 전자고지 제도

- 우편고지 대신 「이메일, 모바일, EDI, 징수포털」로 고지서 수령
- 이메일 : 대표자(또는 직원)명의, 모바일 : 법인 → 법인 또는 법인대표자 명의, 개인 → 대표자 명의
 - ※ 고지서 분실 위험 무, 개인정보 보호 → EDI와 징수포털에서 고지서 출력 납부 가능
 - ☞ 신청방법 : 유선, 우편, 징수포털, 팩스, 내방

웹EDI 사용 방법

○ 웹EDI 가입 절차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에서 사업장 회원 가입 후 웹EDI 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 등록
- 경로 : 홈페이지 사업장 회원 가입 → 분야별 업무사이트 → 웹EDI 서비스 화면 이동

○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 웹EDI : 공동인증서 등록(홈페이지 사업장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경로 : 웹EDI 서비스 화면 → 상단 메뉴 「공동인증서 등록」 클릭

○ 웹EDI 탈퇴 절차

- 웹EDI 서비스 「공동인증서 등록」 화면 좌측 하단 메뉴 「EDI서비스 이용해지」 클릭
- 경로 : 「공동인증서 등록」 → 화면 하단의 **EDI 서비스 이용해지** 선택
- ※ 홈페이지 회원 탈퇴 시 반드시 「EDI서비스 이용해지」를 먼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웹EDI 업무대행 위임 신고

- 업무대행기관
 - ☞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행정사 등) 중 건강보험공단에 웹EDI를 통하여 업무대행 기관 지정 신청 후 승인 받은 사업장
- 위임 사업장(일반 사업장)
 - ☞ 지정 승인된 업무대행기관에서 웹EDI를 통하여 위임 신청 후 승인된 사업장
(위임 사업장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업무대행기관에 제출)
- 위임 신청 및 승인 조건
 - 1) 위임을 신청하는 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어야 함
 - 2) 위임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웹EDI 업무대행 위임장」 작성하여 업무대행기관에 제출
 - 3) 업무대행기관(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행정사 등)은 웹EDI를 통해서 위임 신청
 - 4) 위임 사업장 관할 지사에서 위임 관계 확인 후 승인

받은 문서 상세보기를 하시려면 전체보기를 클릭하세요. [전체보기](#)

순번	받은일자	서식명	구분	최종 받은 일자
1	2021. 03. 29	사업장고지내역서(건강) 고지년월: 202103 고지차수: 1 회계코드: 00	신규	2021-03-29 16:16:33
2	2021. 03. 29	가입자고지내역서(건강) 고지년월: 202103 고지차수: 1 회계코드: 00	신규	2021-03-29 16:16:33

보낸 문서 상세보기를 하시려면 전체보기를 클릭하세요. [전체보기](#)

순번	보낸일자	서식명	접수	상태
1	2021. 03. 29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2	정상2 / 반송0

받은 문서 2건 **보낸 문서** 0건

신규문서 2건 **반송문서 0건**

○ 공단에서 통보하는 문서(매달고지내역, 건강검진 대상자, 보수총액통보서 등)

받은 문서 상세보기를 하시려면 전체보기를 클릭하세요. [전체보기](#)

순번	받은일자	서식명	구분	최종 받은 일자
1	2021. 03. 29	사업장고지내역서(건강) 고지년월: 202103 고지차수: 1 회계코드: 00	신규	2021-03-29 16:16:33
2	2021. 03. 29	가입자고지내역서(건강) 고지년월: 202103 고지차수: 1 회계코드: 00	신규	2021-03-29 16:16:33

보낸 문서 상세보기를 하시려면 전체보기를 클릭하세요. [전체보기](#)

순번	보낸일자	서식명	접수	상태
1	2021. 03. 29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2	정상2 / 반송0

받은 문서 2건 **보낸 문서** 0건

신규문서 2건 **반송문서 0건**

○ 사업장 담당자가 신고한 문서 내역과 그 결과(취득, 상실, 보수월액변경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흉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기존)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시행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 (확대)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유방 및 거드랑이 부위 질환이 의심되거나, 유방 양성종양 환자에게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흉벽, 흉막 등 질환, 늑골 등의 다발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 ※ 단,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 환자부담 변화

- (의료비 부담 완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낮아짐
- 시행일: 2021년 4월 1일

보험 확대 이후 환자부담 변화(유방·거드랑이 부위 초음파(일반), 외래기준)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험 확대 이전	176,300원	117,500원	87,000원	69,700원
보험 확대 이후	62,600원	50,100원	38,500원	31,400원

○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 중증난치 질환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 ('05.9) 암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입원20%, 외래 30~60% ⇒ **입원,외래 구분없이 5%**)
- ('05.9) 뇌혈관(입원), 심장질환자(입원,외래)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입원20%, 외래 30~60% ⇒ **5%**)
- ('09.7) 희귀,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입원20%, 외래 30~60% ⇒ **입원,외래 구분없이 10%**)
- ('16.7) 결핵질환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0%**)
- ('21.7)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제도 도입(0%)
 -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식대, 2~3인실 입원료 등 제외

○ MRI(자기공명 영상 진단) 보험급여

-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 하지 아니함(비급여)
- 입원 진료에도 외래진료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금액을 본인 부담하며 암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진료수가의 5% 부담

○ 노인틀니 보험급여(7년 이내 1회 적용)

- (완전틀니) 상악 또는 하악 완전 무치약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부분틀니)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치과 임플란트 보험급여

- 상악 또는 하악 부분 무치약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적용개수 : 1인당 평생 2개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 비용의 30%

○ 치석제거 보험급여

- 만 19세 이상 후속 처치없이 치석 제거 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급여횟수 : 연 1회 → 횟수 초과 시 비급여

○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2016.10.1.~)

- 4대 중증질환(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본인부담 산정특례자, 4대 중증질환 의심환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임산부 및 고시에서 정한 추가 급여 인정 대상자
- 검사 부위에 따라 69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 검사방법, 난이도 및 시간에 따라 각 항목별 검사 비용이 다를 수 있음

그 외 참고사항

○ 본인부담액 상한제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22년 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 연도에 지급)
 -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
 - (지원범위)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이내 범위에서 차등 지원
 -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모두 충족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안내' 참고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를 현금급여비로 지급
- 지급금액 :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보조기기 지급 유형 : 팔·다리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등 83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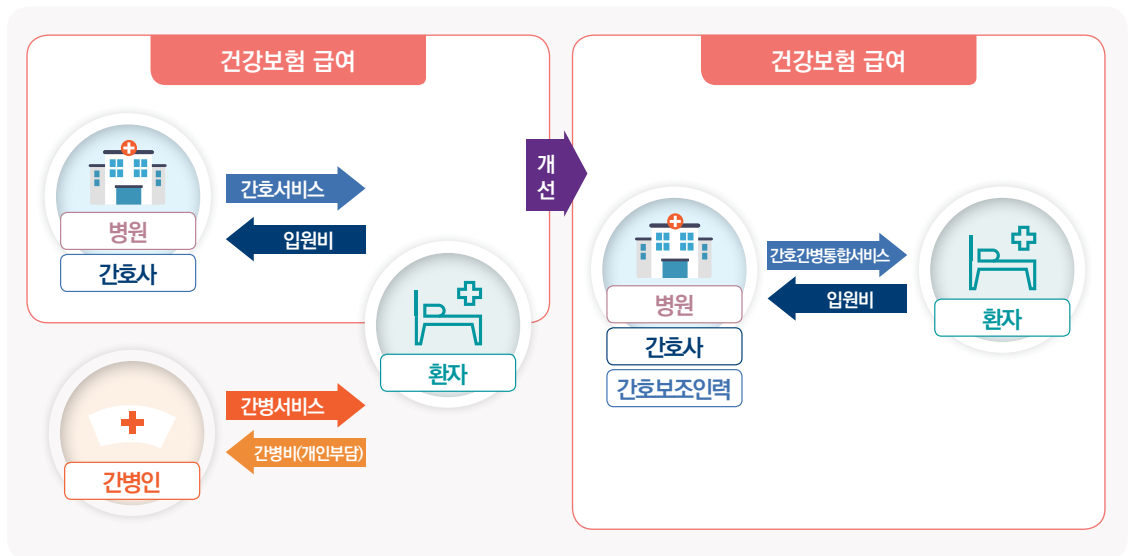
- 병동 환경(시설·장비), 적정 인력 배치 및 환자 안전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 인력이 팀을 이루어 제공하는 입원서비스

○ 추진 목적

- 가족 간병 또는 간병인 고용 등 사적으로 간병인 고용에 드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부담 절감
 - ※ 생업 중단, 간병인 고용 부담 등 환자·보호자 문제 발생과 환자의 안전·감염 등 입원서비스 질 저하

○ 서비스 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 간호·간병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
 - ※ 전문 간호인력으로 팀 구성, 간호·간병 포함한 전인간호 입원서비스 제공



2022년 검진 제도 및 검진 실시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 가능 시기 확대
 - 정해진 연령(만 20, 30, 40, 50, 60, 70세)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받을 수 있도록 수검 가능 시기 확대
- 폐결핵 확진검사 실시
 - 확진검사 질환에 폐결핵을 추가하여 폐결핵 의심질환자의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수검기간 : 2023년 1월 31일까지
- 2022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및 책자 발송 안내
 - 발송기간 : 2022년 3월
 - 발송방법 : 우편 발송, EDI 가입 사업장(KT, 웹) → EDI 통해 전송

2022년 검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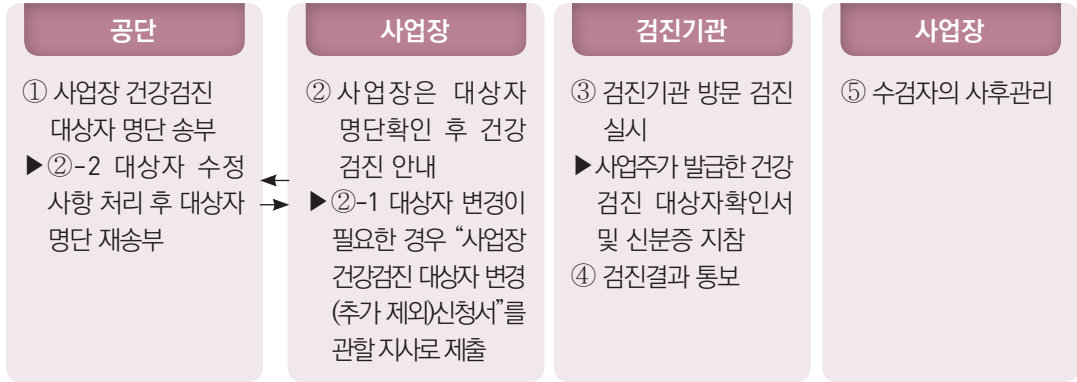
- 검진 대상
 - 일반 건강검진 : 비사무직(매년), 사무직(2년에 1회)
 - 2018년부터 사무직의 일반 건강검진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검진 대상이 됩니다.
 - 암 검진 : 출생연도(짜·홀수)에 따라 암 종별 연령 및 검진 주기에 해당하는 자

구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연령	만40세 이상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만50세 이상	만40세 이상 여성	만20세 이상 여성	만 54~74세 고위험군
검진주기	2년	6개월 (상·하반기)	1년	2년	2년	2년

- 검진 기간
 -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 : 2022.12.31.까지
 - 단, 암 검진 2단계 이상 검사 실시 경우 : 2023.1.31.까지
 - 대장암(대장내시경, 이중조영검사), 위암(위내시경), 폐암(사후결과 상담)

2022년 검진 실시 주요사항

○ 검진 절차



○ 사업장별 검진 대상자 명단

- EDI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별 검진대상자 명단을 우편으로 발송
 - 사업장에서 대상자 명단을 파일로 원할 때에는 사업장 관할 지사에서 파일로 제공 가능
- EDI 가입 사업장
 - 사업장별 검진대상자 명단을 EDI(KT, 웹)를 통해 전송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검진기관에 검진대상자 명단 제공 불가

[검진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검진 시 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문진표 작성 등) 검진기관에 제공만 가능]

🎯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령 안내

○ 사업주의 근로자 일반 건강진단 실시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과태료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지청 산재예방과

○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사업주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제72조제4항제5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근로자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제72조제6항제2호	10만원(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건강검진 사후관리

○ 건강검진 결과 사후관리(대사증후군)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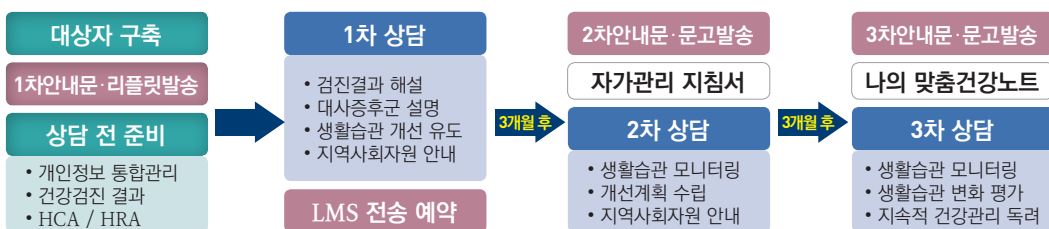
-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 요인인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 혈증 등 5가지 중에서 위험요인 3가지 이상인 대사증후군을 방치하면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관리 필요

○ 서비스 내용

-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상담과 건강정보 제공(문고, 장문자 등) 등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만성질환 이행 방지

※ 건강 위험요인 1~2개 보유자 : 건강정보 제공(우편)

※ 건강 위험요인 3~5개 보유자 : 6개월 중 건강상담(3회), 건강 메시지(LMS, 14회), 건강정보제공(건강문고 등), 자가측정기(혈압, 혈당기) 대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만족도 91.5%
('20.12월 기준)

- ✓ 부양부담 감소
91.3%
- ✓ 제도 필요성
93.5%

신문기사 발췌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어르신은 편안하게, 가족은 든든하게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 **"가장 잘한 정책"**

100세 시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을 위한 효자 정책

2016~2019 올해의 브랜드 대상 (보건복지서비스 부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인지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2008년 약 21만 명 → 21년12월 기준 약 95만 명의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 장기요양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대상

65세 이상 노인
or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수급자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판정 받은 자



1. 인정신청

신청대상자
또는 대리인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 제출

- ☞ 신청인은 전국 어디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내방, 팩스, 우편, 누리집, 모바일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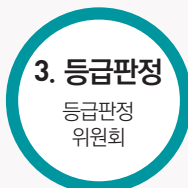


2. 인정조사

공단 직원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

- ☞ 신청인의 심신상태, 필요한 급여종류·내용 등



3. 등급판정

등급판정
위원회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 검토 및 판정

- ☞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 ※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 필요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 필요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 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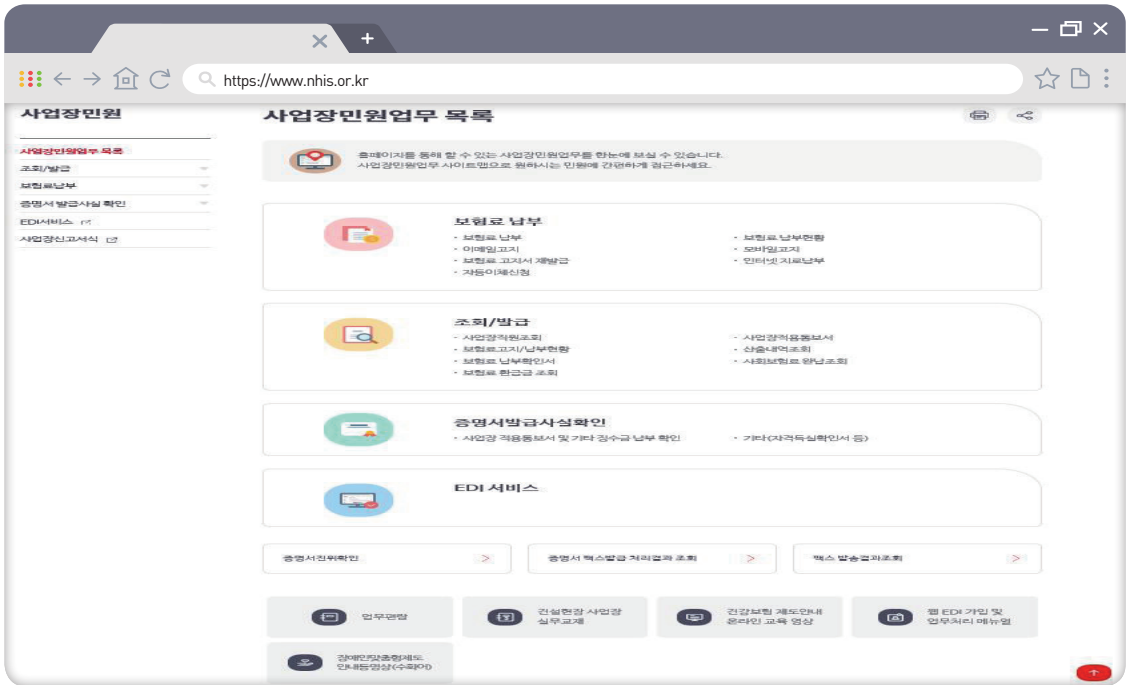


07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 제도를 더 알고 싶은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등재한 사업장 전자업무편람을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에 '사업장 전자업무편람' 검색 후 시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소개(1577-1000)

 <p>이용안내 : 1577-1000 상담시간 : 09:00 ~ 18:00</p>	 <p>수여상담 상담시간 : 09:00 ~ 18:00</p>	 <p>외국어상담 : 033-811-2000 상담시간 : 09:00 ~ 18:00</p>
 <p>금연상담 : 033-811-2090 상담시간 : 09:00 ~ 18:00</p>	 <p>건강 드림콜 서비스 / 검진결과 사후관리 해피콜 서비스</p>	 <p>ARS 구성도</p>
 <p>통화접중일 안내</p>	 <p>건강보험고객센터 소개 (조직 및 연혁)</p>	 <p>장기요양증서자 고충상담 : 033-811-2282 상담시간 : 09:00 ~ 18:00</p>





IV

고용산재보험 제도 안내

고용/산재보험 수행기관

○ 근로복지공단의 설립(산업재해보상보험제 제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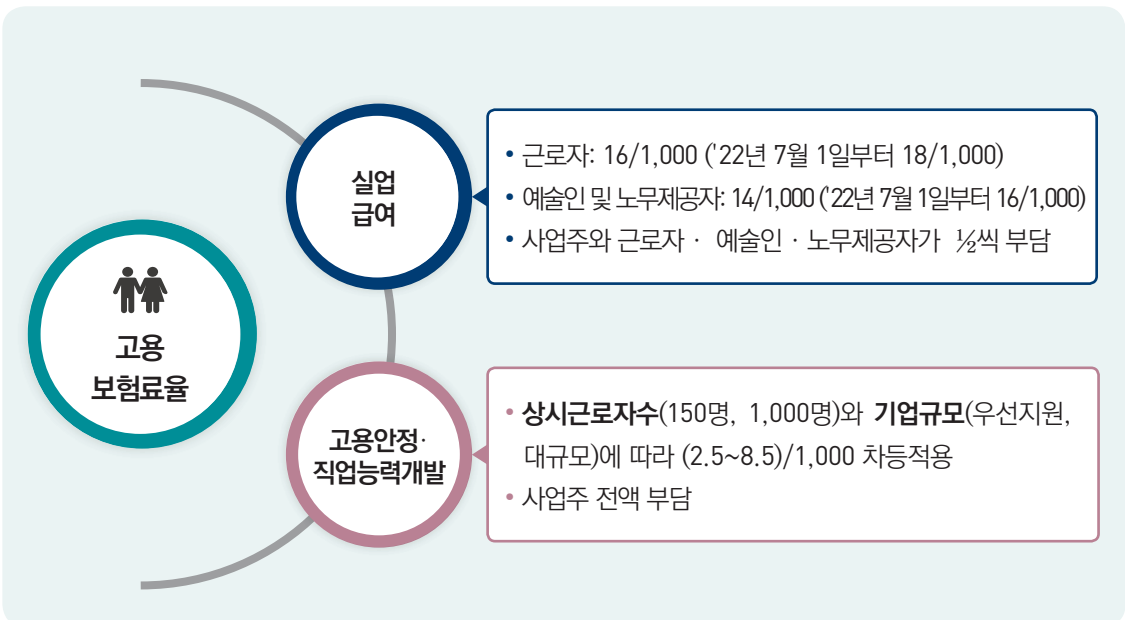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

(제1조 :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사회 복귀 촉진 등)

○ 근로복지공단의 주요사업

- 산재근로자 요양·보상 및 재활
-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지원
- 도산사업장 임금채권보장
-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 실업대책사업 및 저소득근로자 복지지원

고용보험료율



고용·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 : 2.5/1,000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4.5/1,000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6.5/1,000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 8.5/1,000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요율과 개별실적요율, 산재예방요율을 병행 사용

업종별 요율

• 28개 사업종류로 구분하여 산정

※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성·최종 생산제품·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고용 (연도 수정)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2022년 최저 6/1,000~ 최고 185/1,000)

개별실적 요율

-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된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건설업및별목업 제외) 또는 총공사금액 60억원이상(건설업 일괄) 사업장에 대해 재해 정도 (보험수지율)에 따라 해당 업종별 보험요율을 증감
- 개별실적요율 산정시 업무상질병으로 지급된 보험급여 제외

산재예방 요율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및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예방활동 인정결과 등에 따라 다음연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위험성평가: 20%, 사업주교육: 10%)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4. 건설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 창고 통신업	
석회·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철도 항공 창고 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업	28
출판·인쇄·제본업	10	8. 농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 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 14/1,000	

○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 전 업종 1.0/1,000 동일

개별실적요율

보험수지율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

보험수지율	일반사업(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건설일괄(총공사금액)	60억 이상
75%까지		2.3 ~ 20% ↓
75%넘어 85%까지		0
85%넘는 것		2.3 ~ 20% ↑

※ 보험수지율 :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

○ 산재보험료에 추가되는 보험료

**임금채권
부담금 비율**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제10조(부담금의 경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12조(부담금의 징수)
- 고용노동부고시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 [2022.1.1.~2022.12.31.]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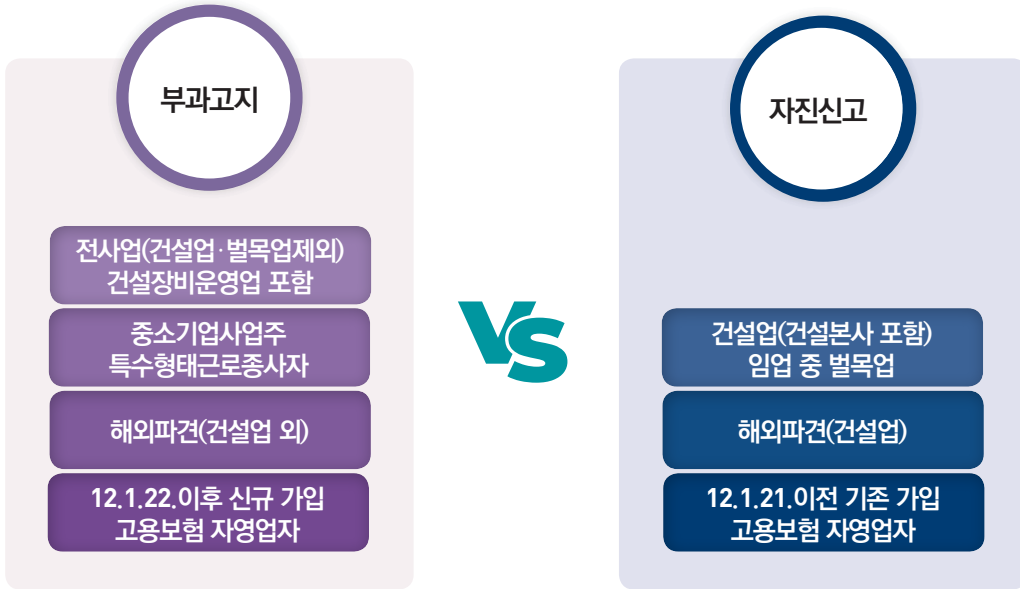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제26조(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 환경부고시 10만분의 3 [2022.1.1~2022.12.31]



02

고용/산재보험 산정방식

부과고지사업 vs 자진신고사업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과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 구분

구분	사업종류(한국표준산업분류표기준)
부과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사업(건설업·별목업 제외) • 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 • 중소기업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해외파견사업(건설업 제외) • 고용보험 자영업자(2012.1.22. 이후 신규가입자)
자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건설업본사 포함) • 임업 중 별목업 • 해외파견사업(건설업) • 고용보험 자영업자(2012.1.21. 이전 기존가입자)

산재업종코드	보험료 징수방식
전사업장(건설업, 건설업본사, 별목업 제외) 및 건설장비운영업(40010)	부과고지(보수총액신고)
40001~40009(건설업)	자진신고(보험료신고)
60001(별목업)	
90515(건설업본사)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보험료 산정

부과고지

- 월별보험료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x 보험료율]의 합산액
- 정산보험료 : [근로자 개인별 연간보수총액 x 보험료율]의 합산액

자진신고

☑ 개선보험료

- 일반적 산정원칙 : 당해연도 추정 보수총액 x 보험료율
-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 (건설)총공사금액 x 노무비율 x 보험료율
(별목)별목재적량 x 노무비율 x 보험료율

☑ 확정보험료

- 일반적 산정원칙 : 실지급된 보수총액 x 보험료율
-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 [직영 보수총액 + (외주비 x 하도급노무비율)] x 보험료율

보수(보험료 산정 기준)

○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3호(정의)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 보수총액 = 소득세법상 총급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⑯)

※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예시

- 월20만원 한도(자가운전보조금, 연구활동비, 벽지수당, 취재수당 등)
- 월10만원 한도(식대, 보육수당)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한

부과고지 사업장

-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매월 15일까지 처리된 근로자 정보 기준으로 보험료 산출

자진신고 사업장

- **신규 성립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
※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은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납부
- **기존 성립사업장 :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
※ 분할납부 신청시 : 1분기 3/31, 2분기 5/15, 3분기 8/15, 4분기 11/15

정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

부과고지 사업장

- **보수총액신고** : 매년 3월15일(소멸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인터넷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팩스, 우편 등
 - 정산보험료는 4월 월별보험료에 반영
 - ※ 300명 이상 사업장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부과고지사업장 보험료 정산(국세청 근로소득자료)**
※ 직권조사부과(미신고, 누락 근로자 등)
- **보험료 퇴직정산** :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2020.1.16. 개정 보험료징수법 시행)
 - 대상자 : 부과고지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로 상실일이 2020.1.17. 이후인 근로자
 - 신고 :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에 보수총액 작성
 - 고지 : 월별보험료에 퇴직정산으로 산정된 정산보험료를 합산하여 고지

자진신고 사업장

- **확정보험료신고·납부** : 매년 3월 31일(소멸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인터넷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팩스, 우편 등
- **건설업 확정정산, 직권조사징수(미신고)**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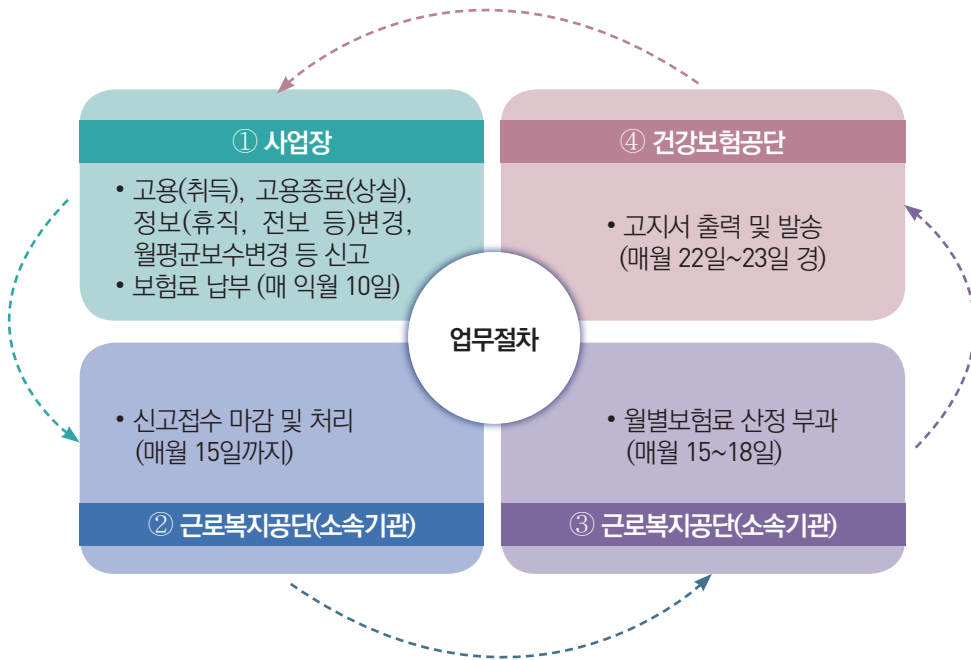
부과고지사업장 보험료 산정

월별보험료 부과

○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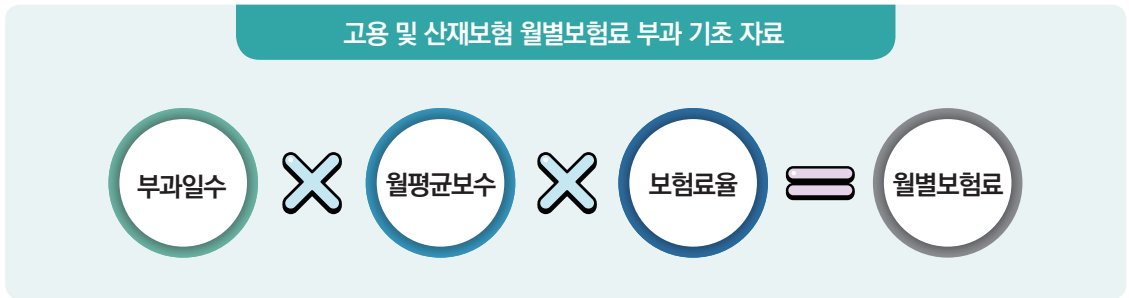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매월 부과

○ 업무절차



○ 산재보험 고용정보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보와 월별보험료와의 관계

- 월별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고용정보(고용일, 고용종료일, 전보일, 휴직일, 휴직종료일 등)에 따라 부과 일수를 산정하고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보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반드시 해야함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정산

○ 개념

- 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월평균보수로 우선 부과한 후, 사업장에서 확정 지급한 보수총액을 다음 해 3월 15일(연도 중 소멸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까지 신고 받아 보험료를 정산
- 기 납부한 보험료가 부족한 경우 추가로 부과하고, 초과한 경우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절차

○ 정산시기



- 사업장 :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
- 정산보험료 고지 : 4월 월별보험료에 포함
- ☞ 4월 월별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2등분하여 4월과 5월에 각각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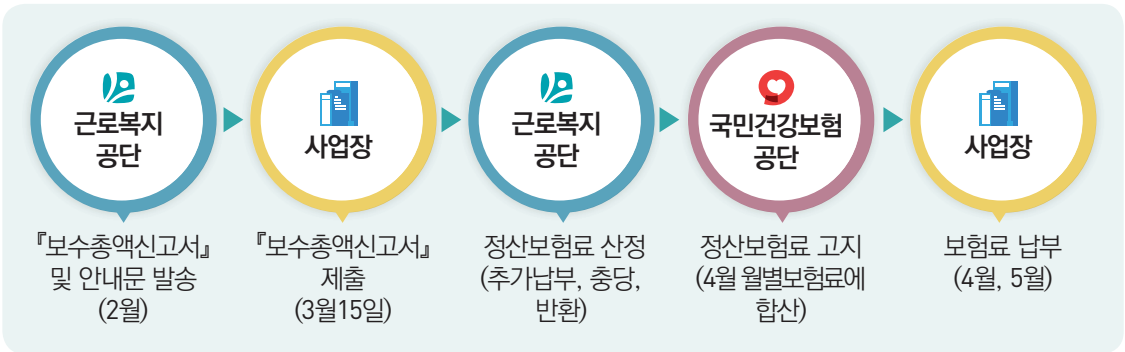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정산보험료 고지 : 정산한 달 또는 다음 달

○ 정산대상

- **전년도(또는 소멸일 전날까지)에 사업주가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고용정보를 신고한 근로자는 개인별 보험료 정산
 - **일용근로자 및 고용정보가 없는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보수총액으로 정산**

○ 업무절차



🎯 퇴직정산

○ 개념

- 부과고지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절차
- ※ 2020. 1. 16. 개정 보험료징수법 시행

○ 대상

- 부과고지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로 상실일이 2020. 1. 17. 이후인 근로자

○ 신고방법 및 고지



•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에 보수총액 작성



• 월별보험료에 퇴직정산으로 산정된 정산 보험료를 합산하여 고지

※ 착오신고의 경우 :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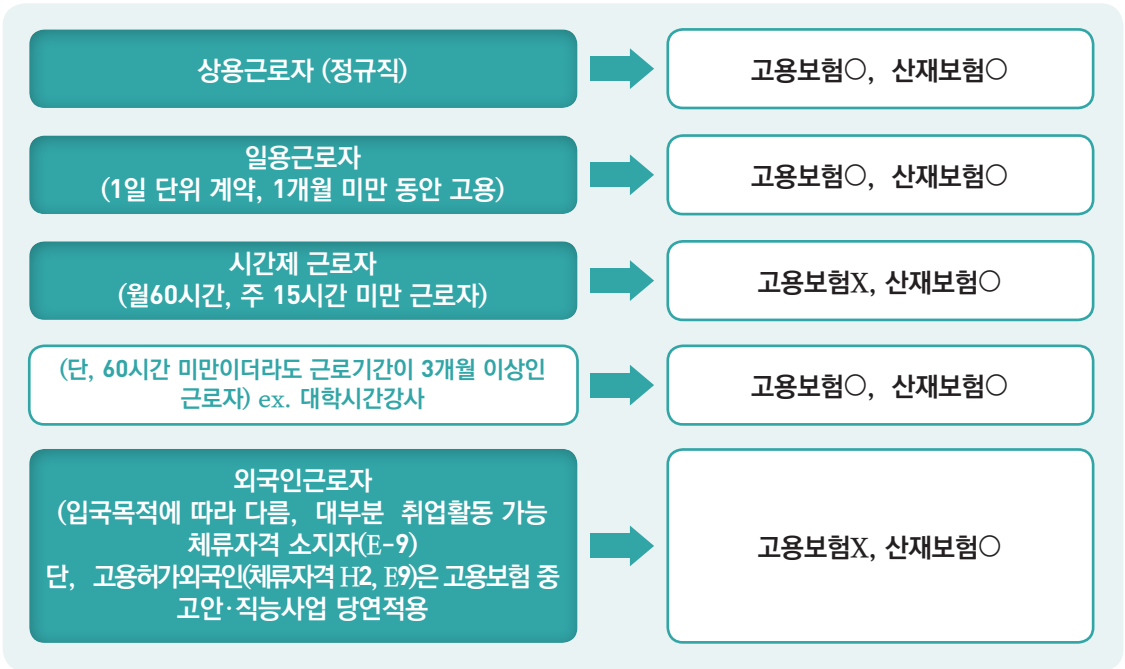
🎯 부과고지사업장 보험료 정산(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연계)

○ 조사에 의한 보험료 정산

- 근로자 고용신고 누락 또는 보수총액 과소신고 등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보수를 조사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정산·부과함
-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자료, 건강보험공단 등 자료 활용

○ 적용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별 월별보험료

산정원칙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 각 보험료율)의 합계액

상용근로자 월별보험료

- 보수총액신고서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 다음년도 4월부터 월별보험료 산정 시 활용

📎 월평균보수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일용근로자 월별보험료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신고
 - ※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보험료는 신고서의 월보수를 기준으로 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 부과

고용정보 신고 제외자(그 밖의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등 고용정보 신고 제외자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산재만 해당**)
- 월평균보수는 보수총액신고서의 그 밖의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사업장의 전년도 보험가입월수로 나눈 **보수로 함**.
- 월별보험료 산정 시 전년도 기타 근로자 보수총액의 12분의 1을 당해 년도 월별보험료에 **합산 부과**

보수총액신고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시) 신고기한은 3월 15일(화)까지입니다.
팩스접수 :

[] 산재보험 [] 고용보험 (2021)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방법은 고용 - 산재 특별서비스(<https://nls.komnet.or.kr>) 또는 전자세무서(C27)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년,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당첨이 아무런 간섭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작성자명 : (전화 :)	처리기간 5일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업종 (요일:)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최종생산품()	팩스번호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 보험료 부과 구분	①-1 건설, 병목업 근무이력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 연간보수총액(원)	근무지코드	취득일	상실일	③ 연간보수총액(원)			
1				Y()										
2				Y()										
3				Y()										
4				Y()										
5				Y()										
6				Y()										
7				Y()										
8				Y()										
9				Y()										
합 계														

④ (2021)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 (해당시 표시) ※ 아래 박스 안에는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뒤쪽 참조)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 산재보험	고용보험												⑦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전체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안직능한 직용인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산재만 해당)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⑤, ⑥) 및 그 밖의 근로자(⑦, ⑧) 수 (상용근로자는 제외)													⑩ (산재보험 업종),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구분 (이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기간 (변경 전)	기간 (변경 후)	
													<input type="checkbox"/> 산재 <input type="checkbox"/> 고용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⑫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선납충당(), 반환() (한 곳에만 표시) (반환계좌: 은행, 계좌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해당·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7(해당·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9)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귀하**

04

고용/산재보험 적용

적용사업장

당연적용

-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
-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임의적용

- 보험가입 의사가 사업주에게 일임
-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가입

의제적용

- 당연 → 적용제외: 임의가입 간주
- 근로자 전원 퇴사: 1년간 유지

1 당연적용 사업(산재보험)

계속 사업

-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2018.7월부터 1인 미만 사업 적용확대)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단, 별목업은 1인 이상)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2018. 7월부터 산재는 연면적, 공사금액 관계없이 적용)

2 당연적용 사업(고용보험)

계속 사업

-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2018.7월부터 1인 미만 사업 적용확대)

농업, 임업, 어업

-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건설업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 건설공사
-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구분	총공사금액	연면적
일반공사	2,000만원 이상	-
건축공사	2,000만원 이상	100m ² 초과
대수선공사	2,000만원 이상	200m ² 초과

2 적용제외 사업

당연적용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른 법령 :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 보험관계의 성립

	구분	보험가입자	성립일
계속사업	당연적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법인,자연인)	당연적용 해당일
	임의적용		승인 신청서 접수 다음날
건설공사	수차의 도급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수급인 • 승인 받은 하수급인 	실 착공일
	직영공사		

◎ 성립신고서 작성 요령

1 국민연금 당면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건강보험 · 국민연금 3일 고용 · 산재보험 5일
사업장 사용자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FA번호
	업태	종 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거래 은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 자용이체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전자고지 신청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동전화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우편고지서 <input type="checkbox"/> 수령 <input type="checkbox"/> 미수령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2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 사업장 해당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	--

3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업종
우선지원 대상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3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있음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4 신고인 · 신청인(사용자 · 사업주)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 · 산재보험만 해당) _____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① 신고대상 보험을 각각 선택해주시고, 공통 필수사항에 대해서 모두 작성해주세요.
- ②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란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인 경우 체크해주세요.
(여기서잠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53p를 참조해주세요.)
- ③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내용을 작성해주시고, 산재보험의 경우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를 꼭 체크해주세요!
- ④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지 않게 확인해주세요.

4 성립신고, 보험료 납부 태만 시 불이익

- 보험관계 성립신고 :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제출

성립신고 태만 중 재해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개시일~1년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50%

상한선 :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 초과 금지

보험료납부 태만 중 재해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보험료 50% 초과 체납)

재해발생일부터 납부 전날까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된 보험급여의 10%

상한선 :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 초과 금지

05

피보험자격 및 고용정보 신고

피보험자격취득 및 근로자 고용신고서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근로자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공동(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실일(고용관계종료일), 해당연도 보수총액, 전년도 보수총액)
- 고용(직종, 주 소정근로시간, 계약직 여부 추가기재)
- 2개 이상 사업장에 이중취득시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 근로자 고용신고

고용보험은 다음 각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 선택한 사업장

- 신고제의 대상 근로자 :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J"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구분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 (원)	자격 취득일 (YYYY, 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체류 자격				자격취득부호	투수부호	정액부호	자격취득부호	보험료 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부호	직종명/부호	직무명/부호	1주 소정 근로시간	
1			[]예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산재보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피보험자격상실 및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

○ 사업주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고용관계 종료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공통(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실일(고용관계종료일), 해당연도 보수총액, 전년도 보수총액)
- 고용(상실사유 추가기재) : **상실사유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여부 결정**
- 기재된 해당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보험료 정산 (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회사일의 다음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주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_____ 접수일자: _____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7일)

사업장: _____ 사업장관리번호: _____ 명칭: _____ 전화번호: _____ 팩스번호: _____
소재지: _____ 우편번호(): _____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_____ 번호: _____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 부호	초입취득· 당월상실자 납부여부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 총액	전년도 보수 총액					
								해당 연도 보수 총액	전년도 보수 총액				구체적 사유	해당 연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년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 피보험자 전근 및 근로자 전보신고

- 근무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보일, 전보 사업장 명칭 및 관리번호
 - 전보 후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전보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서 처리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기호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8일(고용보험은 7일)
사업장	전근(전보) 이전 사업장	전근(전보)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근일
	피보험자 (근로자)	[]	고용	[]	산재
[]		고용	[]	산재	년 월 일
[]		고용	[]	산재	년 월 일
[]		고용	[]	산재	년 월 일
[]		고용	[]	산재	년 월 일

◎ 휴직 등 신고서

○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업·휴직 기간의 시작일·종료일, 휴직사유
- 휴직기간 발생한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은 미부과,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시 부과
- 사유 : 휴업·휴직·산전후보호휴가·노조전임자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8서식] <개정 2015.12.31.>

고용·산재보험토달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알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 고 장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명칭	_____			
	소재지	_____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업·휴직 등 시작일	종료일	휴업·휴직 등 사유
		-			<input type="checkbox"/>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input type="checkbox"/> 육아휴직 <input type="checkbox"/>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input type="checkbox"/> 유산·사산 휴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조전임자 <input type="checkbox"/> 출산전후휴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실업급여만 부과

월별보험료, 정산보험료 모두 부과

= 고용, 산재 모두 부과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산정된 후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 공단의 착오 산정, 사업주의 착오 신고 등 월평균보수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월평균보수 적용일

- 신고서에 기재한 **보수 변경월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 적용
- 단, 보수 변경월이 연도 소급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 1일로 적용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보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0.12.10.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국인등록번호) ·국가소속번호	국민연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지만 신청)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자리안정 자금 지원 신청
	기준소득월액 변경 연월	변경 기준소득 월액	근로자 등의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보수월액	보수 변경 월	변경 사유	변경 후 월평균보수 고용보험	보수 변경 월	변경 사유	
							고용보험	산재보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정정 및 취소



○ 피보험자·고용정보 정정

- 공통사항 : 취득일(고용일), 상실일(고용종료일), 전근일(전보일), 휴직시작일, 휴직사유, 보험료부과구분
- 고용보험 : 주소정근로시간, 직종 등 기타 취득신고 내용, 상실사유
(고용정보 내역 취소 및 정정신청은 각 기관 고유 서식으로 각 기관으로 전송 요망)



○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내역 취소

- 취득일(고용일), 상실일(고용종료일), 전근(전보), 휴직일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일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소재지		FAX번호				
보험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 여부	취소번호	취소내용	취소사유	
								<input type="checkbox"/>
고용 내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용 내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용 내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용 내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용 내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용 내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거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				계좌번호		에요주명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취소 등으로 보험료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될 계좌입니다.
작성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구분] 취소하고자 하는 해당보험에 (표시)고용신재보험 표시 중장 시 양쪽 모두 (표시) [취소번호] 1. 취득일(고용일) 2. 상실일(고용종료일) 3. 전근일(전보일) 4. 휴직일 5. 이직확인 [취소내용]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내역의 항목 중 취소하고자하는 내용을 작성 [취소사유]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제출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보험자가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별도로 해당기관으로 각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취소 신청합니다.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주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일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소재지		FAX번호			
보험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 여부	정정 내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고용 내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용 내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용 내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용 내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용 내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용 내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출서류 :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작성방법							
[보험구분] 정정하고자 하는 해당보험에 (표시)고용신재보험 표시 중장 시 양쪽 모두 (표시) [정정번호] : 공통사항: 3.취득일(고용일) 4.상실일(고용종료일) 5.전근일(전보일) 6.휴직시작일 8.휴직사유 9.보험료 부과구분 *고용보험: 1.주소정근로시간 2.직종 등 기타 취득신고 내용 3.상실사유 4.이직사유(이직확인서) 5.평균임금 등 기타 이직 확인 내용 [변경일] : 보조로부위 금액을 지급받은 보조직임자의 신분변동일(근로자-보조직임자 상호신분변동시)에만 기재 [정정사유] : 정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보험자가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근로종사자 보장여부, 휴직종류일의 변경은 「피보험자 내역변경신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별도로 해당기관으로 각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정정 신청합니다.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주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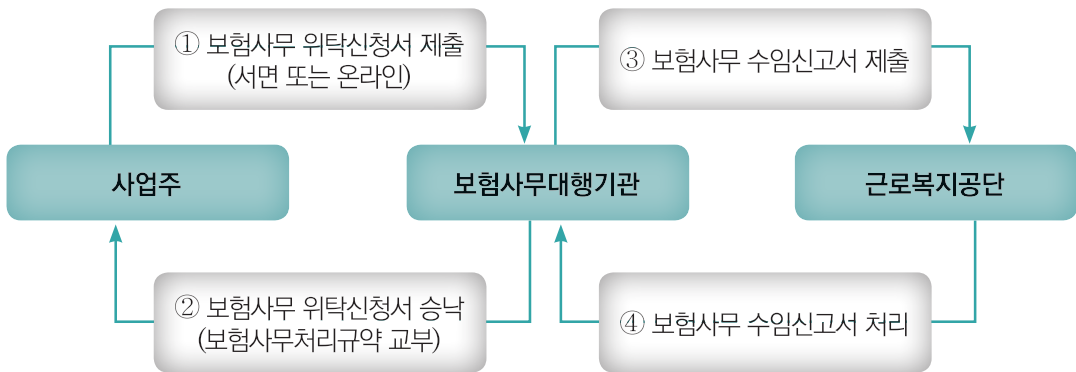
1. 보험사무대행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인노무사·세무사** 등을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인가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업주에게** 보험사무대행 서비스를 제공
 ⇒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은 무료 대행 서비스 제공
 ※ '21년 12월말 현재 전국 약 5,400여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공단 홈페이지 참조)

2.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신청을 원하는 **모든 사업주**
 ※ '19.1.1.부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가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주에서 ⇒ 모든 사업주로 확대

3.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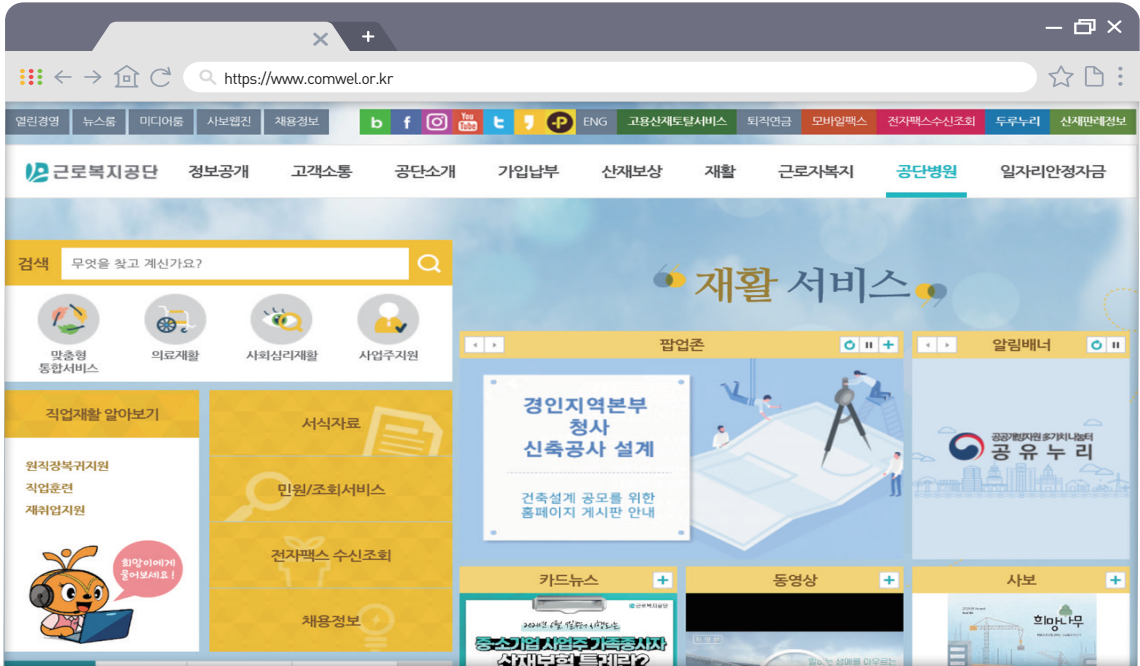


- ① 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하여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 (서면) 보험사무대행기관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메뉴 선택 → 사업장정보 입력, 사무대행 희망기관 선택 → 접수(사업장 또는 대표자 공동인증서 필수)
- ②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승낙 및 보험사무처리규약(약관) 교부
-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에 사무수임 사실을 신고(14일 이내)
- ④ 공단의 사무수임신고서 처리와 함께 “보험사무대행 서비스” 개시

07

근로복지공단 안내

- 고용산재보험 제도안내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 고객센터(1588-0075, 유료)






2022 찾아가는 4대사회보험 교육

발 행 인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 행 처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포털사이트 사용 문의 063-711-7800

국민연금 문의 1355 건강보험 문의 1577-1000 고용·산재 문의 1588-0075